

한·미 FTA 농업부문 국내보완대책 토론회 결과

선임연구위원 김 정 호
연구위원 이 용 호

머 리 말

이 자료집은 농림부의 의뢰를 받아 우리 연구원이 주관하여 지난 5월 29일 개최한 “한·미 FTA 농업부문 국내보완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의 주제발표 자료와 토론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지난 4월 초에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됨으로써 우리나라 농업이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 또 한 차례의 커다란 시련에 처하게 되었다. 우리 연구원을 비롯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으로 한·미 FTA 영향을 분석하여 발표하였듯이, 시장개방 진전에 따라 국내 농업생산액은 줄어든 전망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의 걱정은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와 농업인, 학계와 연구소, 관련 종사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정부는 금년 6월까지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해당부처에서는 추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농림부는 농업구조 개선과 농가소득 증진 대책, 품목별 경쟁력 향상 대책, 개방 진전에 따른 단기적 피해보전 장치 확충, 교육·복지 개선 등 농촌생활여건 개선 등에 관한 세부시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아울러 “FTA이행지원 특별법령”을 개정하여 대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대책안에 첫 번째 의견 수렴의 장이며, 우리 연구원은 앞으로도 정부에 대한 정책 제안은 물론 각계의 의견 수렴을 수행할 것이다.

짧은 기간 동안에 이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후 토론 내용을 정리하여 자료집으로 엮은 연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이 자료집이 관련정책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2007. 6.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정 섭

목 차

토론회 개요	1
발제자료 I	3
농업구조 변화의 전망과 정책 과제	
발제자료 II	19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국내보완대책(안)	
토론 내용	75

토론회 개요

주제 : 한·미FTA 농업부문 국내보완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일시 : 2007. 5. 29(화) 14:00~18:20
- 장소 : 한국마사회 대강당
- 주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좌장 : 최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 주제발표 I : 김정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제목 : 농업구조 변화의 전망과 정책과제
- 주제발표 II : 박현출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장)
 - 제목 :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국내보완대책(안)
- 지정토론
 - 김동환 (대한양돈협회 회장)
 - 김종기 (중앙대학교 교수)
 - 남호경 (전국한우협회 회장)
 - 박종수 (충남대학교 교수)
 - 양민웅 (제주도 감귤 농업인, 제주도 FTA 대책위원회 위원)
 - 윤원근 (협성대학교 교수)
 - 윤익노 (전국과수협회 회장)
 -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
 - 임정빈 (서울대학교 교수)

가나다 순

농업구조 변화의 전망과 정책과제

1. 농업구조 변화의 장기 추세
2. 농업구조조정과 시장개방의 영향
3. 농업구조정책의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 정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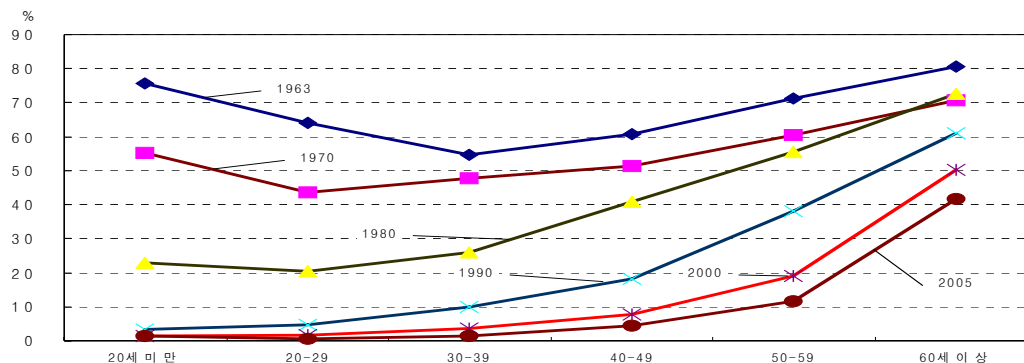
1. 농업구조 변화의 장기 추세

1.1. 산업화에 따른 농업인력구조 변화

□ 산업화 과정에서 농업부문에는 취업자 과잉과 고령자 누적

- 경제발전에 따른 농업 비중 감소는 선진국들의 공통적인 경험이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2~5배 빠른 속도로 산업구조 전환이 진행되면서 상대적으로 적응이 늦은 농업부문의 어려움이 누적됨.
 - 생산구조조정(농업생산 비중 감소 40%→7%)에 소요된 기간: 유럽 5개국 평균 117년, 미국 92년, 일본 73년, 한국 26년
- 농업GDP 비중은 빠르게 감소('70~'05년간 연평균 6.0%)하는 반면, 농업취업자 비중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감소('70~'05년간 연평균 5.2%)함으로써 농업 부문에는 취업자 과잉 현상을 초래함.
 - 농업GDP 비중: ('70) 25.5% → ('80) 13.8 → ('90) 7.8 → ('05) 2.9
 - 농업취업자 비중: ('70) 49.5% → ('80) 32.4 → ('90) 17.1 → ('05) 7.6
- 다른 직업으로 전직이 어려운 40대 후반의 인력이 농업 부문에 누적되고 이들이 고령화됨으로써 경쟁력이 취약한 인력구조를 가지게 됨.
 - 60세이상 농업취업자 비중: ('70) 6.3% → ('80) 11.1 → ('90) 23.7 → ('05) 54.8

그림 1. 농업취업자의 연령구조곡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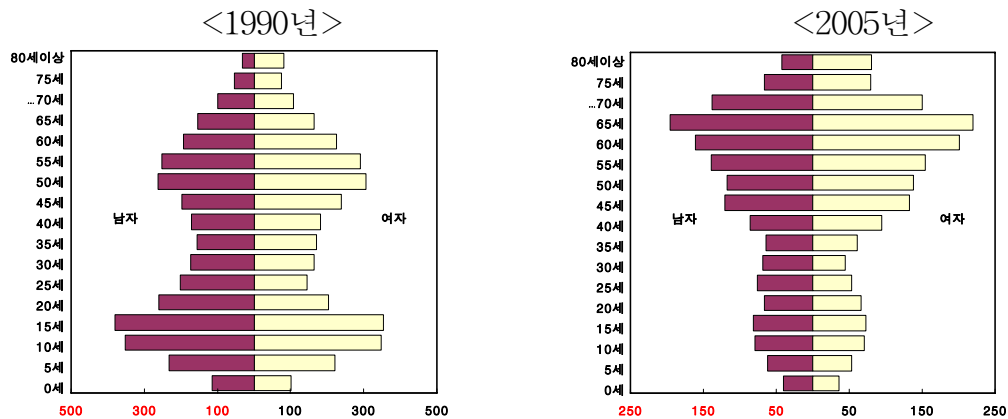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농가인구는 현재 초고령화 단계에 진입해 있으며, 후계인력 부족으로 고령경영주 비중이 계속 증가

- 농가인구의 연령별 구성을 보면, 1980년대까지는 '피라미드형'이었으나, 1990년에는 10대와 50대 비중이 두터운 '항아리형' 구조를 나타냈고, 2005년에는 60대 비중이 최빈수인 '역삼각형' 형태를 나타내고 있음.
- 고령화 지수(65세 이상 인구/14세 이하 인구): ('90) 56 → ('05) 306

그림 2. 농가인구 연령별 구성 변화



자료: 통계청, 농업총조사 원자료 분석.

- 경영주는 고령화하는 반면 신규취농 인력이 미흡하여 은퇴연령인 70세 이상 고령자가 농가(대부분 독신가구)로 잔류하게 됨.
- 50세 미만 경영주는 1995년 27.9%에서 2005년 17.0%로 감소
- 70세 이상 경영주는 1995년 12.7%에서 2005년 24.5%로 증가
- ※ 영농후계자 보유농가 비율: ('90) 16.4% → ('00) 11.0% → ('05) 3.6%

표 1. 경영주 연령별 농가 수의 추이

단위 : 천호, %

연 도	29세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	합 계
1995년	12 (0.8)	134 (8.9)	272 (18.2)	447 (29.8)	445 (29.6)	190 (12.7)	1,501 (100.0)
2005년	2 (0.2)	40 (3.1)	186 (14.6)	302 (23.8)	430 (33.8)	311 (24.5)	1,273 (100.0)
2015년 (추정)	0.5 (0.1)	8.4 (1.0)	59 (6.7)	207 (23.5)	368 (41.7)	240 (27.2)	883 (100.0)

자료: 통계청, 농업총조사에서 작성.

1.2. 식품소비 추세와 농업생산구조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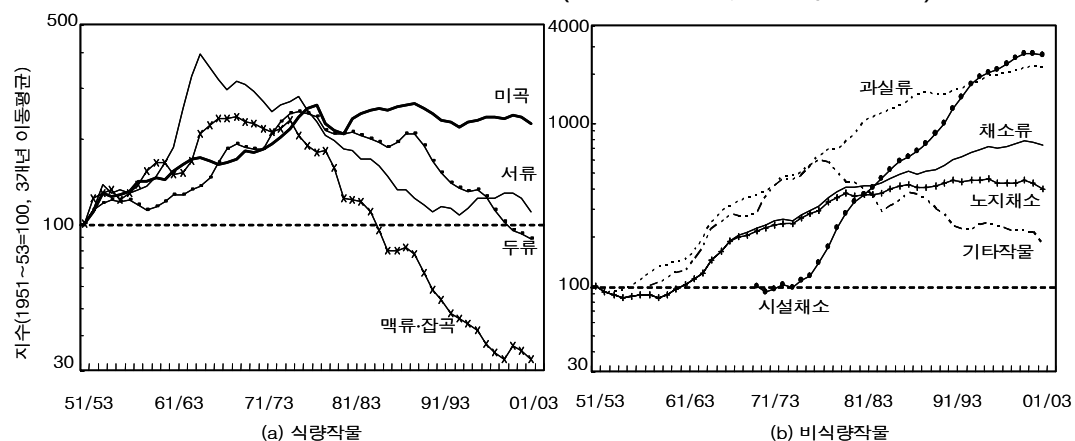
□ 식생활의 서구화에 따라 쌀 소비는 빠르게 감소하고, 과일과 육류 소비는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

- 양곡 소비량은 1967년 1인당 197kg을 최고점으로 계속 하락하는 추세
 - 쌀 1인당 소비량은 1979년 135.6kg을 기록한 후 연평균 2% 속도로 빠르게 감소하여 2006년에 78.8kg 수준
 - 기타 곡물의 2006년 소비량은 보리 1.2kg, 밀가루 1.3kg, 두류 3.0kg, 서류 2.4kg, 잡곡 0.5kg 등임.
- 채소, 과일, 축산물 등의 소비량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
 - 채소류는 1980년 120kg 수준에서 2005년 160kg 수준으로 증가
 - 과일류는 1980년 17kg 수준에서 2005년 42kg 수준으로 증가
 - 육류는 1980년 13kg 수준에서 2005년 39kg 수준으로 증가
 - 우유류는 1980년 10kg 수준에서 2005년 53kg 수준으로 증가

□ 1980년대 들어 농업생산이 시장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성장 작목과 쇠퇴작목으로 분화하기 시작

- 쌀 자급을 실현한 후 식량작물 생산이 정체 내지는 감소로 전환되면서 과일, 채소, 축산의 비중이 늘어나기 시작함.

그림 3. 경종작물의 생산 추이(1951~2003, 1951/53=100)



□ UR 타결 이후 생산성 향상과 수입 증가에 따라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농업소득은 정체 국면으로 전환

- 2000년대 들어 전반적으로 농업총생산액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가운데 품목별로 성장작목과 쇠퇴작목이 더욱 명확해짐.
- 축산은 계속 성장하고 있으나, 채소와 과일은 2000년 이후 성장률이 다소 정체 경향임.

표 2. 농업생산액의 품목류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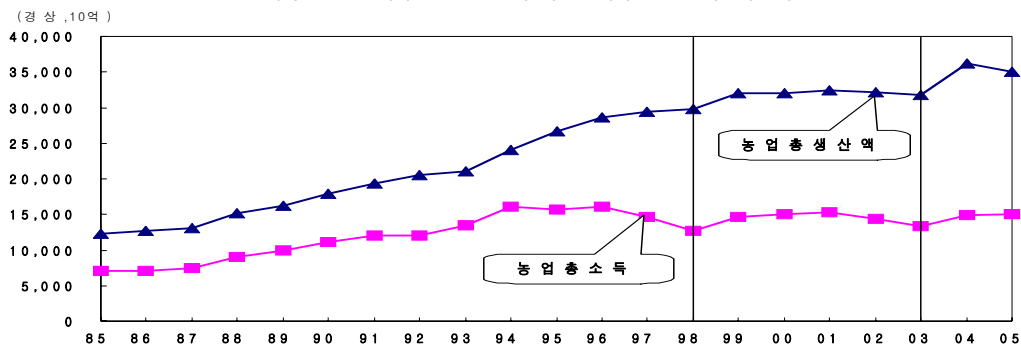
단위: 10억원(2000년 기준)

구 분		식량작물	채 소	과 실	특작기타	축 산	합 계
1995년		9,975 (32.1)	7,534 (24.2)	3,482 (11.2)	2,982 (9.6)	7,125 (22.9)	31,098 (100.0)
2000년		11,362 (35.7)	6,858 (21.6)	2,603 (8.2)	2,959 (9.3)	8,035 (25.3)	31,818 (100.0)
2004년		9,201 (29.8)	6,661 (21.6)	2,508 (8.1)	3,088 (10.0)	9,428 (30.5)	30,885 (100.0)
변화	95 ~ 00	2.64	-1.86	-5.65	-0.15	2.43	0.46
율(%)	00 ~ 04	-5.14	-0.73	-0.93	1.07	4.08	-0.74

주: 생산액은 GDP 디플레이터로 실질화한 3개년 이동평균치임.

- 농산물 공급과잉으로 1995년부터 농산물 실질가격이 하락 추세로 반전되어 농업소득의 정체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함.
-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면서 농업생산액은 증가하지만 농업소득은 늘어나지 않는 “성장과 소득의 괴리” 현상이 뚜렷해지기 시작함.

그림 4. 농업총생산액과 농업총소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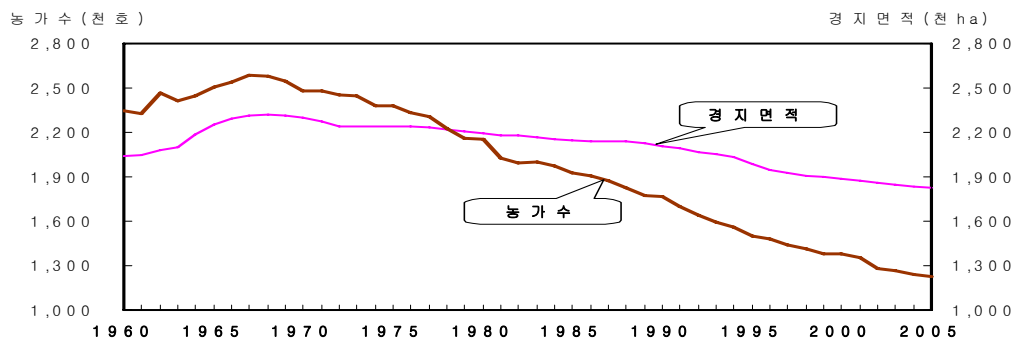
주: 1998년은 외환위기 영향, 2003년은 냉해와 구제역 영향임.

1.3. 시장경쟁을 통한 농업경영구조 변화

□ 영농규모 확대와 전문화된 대농의 생산 집중

- 농가호수는 빠르게 감소하는 반면 경지면적 감소는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진행됨으로써 호당 경지규모 확대가 진전됨.
- 농가호수는 1970년 기점으로 연평균 1.9%씩 감소, 경지면적은 1968년 기점으로 연평균 0.6%씩 감소

그림 5. 농가 수 및 경지면적의 추이



- 1990년대 들어 대규모 농가로의 농지 집중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시설원예와 축산 등은 대농의 생산 집중이 현저함.
- 논 3ha 이상 경영농가는 1990년에 호수 비중 1.2%, 면적 비중 6.2%였으나, 2005년에는 호수 비중이 4.9%, 면적 비중이 26.4%로 증가
- 한우 30두 이상 사육농가는 1990년에 호수 비중 0.5%, 두수 비중 9.9%였으나, 2005년에는 호수 비중 6.9%, 두수 비중 47%로 증가

표 3. 대농의 농가 비중 및 생산 비중 추이

단위: %

연도	1995		2000		2005		2015(추정)	
	호수비율	면적비율	호수비율	면적비율	호수비율	면적비율	호수비율	면적비율
경영규모								
논 3ha 이상	2.8	14.8	3.8	20.0	4.9	26.4	9.0	36.8
밭 2ha 이상	2.5	18.0	3.2	24.0	3.9	30.0	5.7	41.9
과수원1ha이상	13.6	42.9	14.1	44.3	14.6	45.8	15.7	48.7
시설2천평이상	12.4	38.3	10.5	47.1	9.6	52.9	7.5	56.1

연도 경영규모	1995		2000		2005		2015(추정)	
	호수비율	두수비율	호수비율	두수비율	호수비율	두수비율	호수비율	두수비율
한우 30두 이상	1.7	16.6	3.1	36.4	6.9	46.9	14.4	58.8
젖소 50두 이상	5.6	17.8	28.0	50.4	49.9	71.6	73.7	92.1
돼지 1천두 이상	2.4	36.5	9.8	60.2	24.0	77.9	42.4	88.2
닭 3만수 이상	0.3	44.0	0.5	60.1	1.1	73.7	2.2	82.3

자료: 통계청, 농업총조사. 농림부, 가축통계.

- 한편, 농가 중에는 생계유지적 영세고령농이 다수 존재하며, 이들은 농지보유 의향이 강하고 은퇴시까지 자급적 영농을 지속하려는 경향임.
- 영세농 성격(경지 0.5ha 미만 농가, 2005년): 농가수 47만호(비율 37.3%), 경지면적 합계 123천ha, 경영주 70세 이상 비율 47%

□ 농가 이외의 새로운 농업경영체 형성

- 1990년부터 가족농의 발전적 형태로서 농업법인 제도가 도입되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역농업 조직체의 법인화가 활발하게 추진되는 경향임.
- 기업적인 농업경영체로 축산기업,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작업 서비스사업체, 공기업 경영체 등이 존재함.
- 2005년 말에 운영중인 농업법인은 총 5,626개소이며, 영농조합법인(협업체)과 농업회사법인(기업체)은 대부분 농업경영보다는 가공·유통사업에 중점을 두는 경향임.

표 4. 농업법인 현황(2005년)

단위: 개, %

구 분	운영중		출자자 공동운영	대표자 단독운영	출자자 개별운영
		비율			
합 계	5,626	100.0	2,841	708	1,711
영농조합법인	4,293	76.3	2,396	562	1,335
농업회사법인	967	17.2	445	146	376
일반회사법인	88	1.6	-	-	-
기 타	278	4.9	-	-	-

주: 기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 학교,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자료: 통계청, 2005년 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

2. 농업구조조정과 시장개방의 영향

2.1. UR 협정의 이행경과와 전망

□ UR 이행에 따른 농업구조조정 속도는 추세치보다 0.5~1.0%P 정도 가속화된 것으로 계측됨.

- 농가호수와 농업취업자는 1980년대에 비해 1990년대 들어 감소 속도다소 둔화되었으나, UR 이행에 따라 농가호수는 -0.49%P, 농림업 취업자는 -1.04%P 정도로 빠르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 농업총생산액은 1995~05년간은 연평균 2.96%로 하락했으며, UR 이전상황 지속시(baseline)와 비교하면 0.6%P 정도 증가한 (+)효과로 나타남.
- 농업총소득이나 농가소득에 대한 UR 효과는 (-)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농업총소득의 영향은 -1.90%P로 크게 나타남.

표 5. UR 전후의 농업 주요지표 연평균 변화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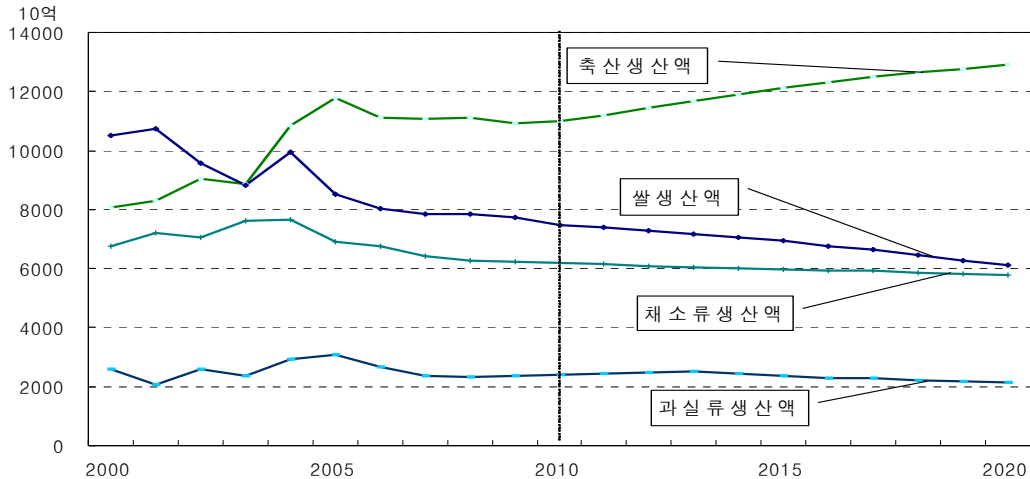
구 분		농가호수	농업취업자	농업생산액	농업총소득	농가소득
1985-1995	실측치	-2.43	-4.36	8.08	8.36	14.24
1995-2005	UR이전지속	-1.53	-1.68	2.36	0.81	3.89
	실측치	-2.02	-2.72	2.96	-1.09	3.14
UR 효과		-0.49	-1.04	0.60	-1.90	-0.75

자료 : KREI-ASMO 추정결과.

□ 앞으로 쌀 등 경종작물의 재배면적 감소와 수입 증가로 인해 농업 총생산액은 완만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추세와 DDA 개도국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농업생산을 전망하면 2015년 농업총생산액은 32조 2천억원 수준으로 전망됨.
- 쌀 생산은 빠르게 감소하는 반면, 채소와 과실은 정체 기조를 나타내고, 축산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 6. 품목류별 농업생산액의 추세 전망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2007』에서 재작성.

2.2. 한·미 FTA에 따른 농업생산액 및 취업자 감소 추정

□ 농업부문 총량모형(KREI-ASMO)을 이용하여 기준추정치(baseline)에 대비한 영향의 차이를 계측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부문 총량모형(KREI-ASMO 2006)을 이용 품목별 농업생산액을 추정하고, 생산액 감소에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의 취업유발계수를 적용하여 품목별로 취업자 감소를 추정함.
- KREI-ASMO는 거시변수 전망부문, 투입재가격 전망부문, 재배업 전망부문, 축산 전망부문, 그리고 총량 전망부문 등 크게 5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계량분석 패키지임.
- 기준 추정치(baseline)는 한·미 FTA가 없는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는 가정으로, 기존의 정책변수와 농업부문 변화 추세(생산, 고용 감소 등)는 기준 추정치에 반영됨.
- 취업유발계수는 2005년 수치(산업연관표)가 공표되지 않아 시계열 자료가 미흡하여 1995~2000년의 변화분을 기준으로 이후 5년 구간마다 1/3씩 체감하는 것으로 추정함.

- 한·미 FTA 이행에 따른 국내 농업생산 감소액은 발효 후 5년차에 4,465억원, 10년차에 8,958억원, 15년차에 1조 361억원으로 추정됨.
- 주요 분석 대상 농산물의 시장개방 이행기간은 7년부터 18년까지 다양하며, 이행기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평균 생산액 감소는 6,149억원으로 추정됨.
 - 15년 이전에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품목의 생산액 감소를 15년까지 연장하여 계산한 15년 평균 생산액 감소는 6,698억 원임(이행기간 마지막 년도 생산액 감소를 15년까지 연장).
- 농업생산액 감소를 토대로 추정한 농업취업자 감소는 5년차에 18,330명, 10년차에 35,450명, 15년차에 41,430명 등임.
- FTA 이행 15년차의 품목별 취업자 감소는 축산 21,070명, 과수 11,430명, 채소특작 5,110명, 곡물 3,820명 등의 순임.

표 6. 한·미 FTA에 따른 품목류별 생산액 및 취업자 감소 추정

단위: 억원, 명

구 분	생산액 감소			취업자 감소		
	5년차	10년차	15년차	5년차	10년차	15년차
곡 물	46	153	240	750	2,448	3,824
채소, 특작	301	457	538	2,899	4,351	5,111
과 일	993	1,933	2,787	4,369	8,123	11,427
축산물	3,124	6,415	6,797	10,309	20,531	21,071
총 계	4,465	8,958	10,361	18,327	35,453	41,432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미 FTA 협상 결과에 따른 농업 부문 파급영향』(미발간자료, 2007.4)에서 재작성.

- 주 1) 한·미 FTA는 2009년부터 발효되는 것으로 가정.
 2) 이행기간이 15년 이전에 완료되는 품목은 15년까지 최종년도 감소액이 지속된다고 가정.
 3) 보리는 수매정책이 유지된다고 가정.
 4) 식용대두의 TRQ 물량의 대부분은 가공용으로 관리하는 것을 전제.
 5) 검역문제는 고려하지 않았음.
 6) 감귤에는 한라봉 등 시설재배 감귤 포함.

3. 농업구조정책의 과제

3.1. 농업구조조정의 필요성

- 2000년 이후 농업총생산액이 31조원대의 '박스권'에 정체 경향이며, 앞으로 국내 소비를 전제로 한 농업생산 증대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움.
- 2015년 농업총소득은 대략 13조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업농 호당 평균 농업소득을 4천만원(농가소득의 8할을 농업소득으로 상정)으로 가정할 때 약 30만호의 농가에 분배될 규모로, 중소농의 몫까지 고려하면 호당 소득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음.
- 기계화·자동화 등의 기술진보에 의한 생산성 향상이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농업인력의 고령화로 인해 전반적으로 활력이 저하되고 있음.
- 현재 1조원 생산에 약 5만명이 취업하고 있는 상황이나, 기계화·자동화 진전에 따라 소요인력(취업계수)은 점점 줄어들 전망이므로, 전업농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한 소득 증대가 불가피함.
- 청년층의 후계인력이 농업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고령농업경영주의 유연한 은퇴가 전제되어야 함.
- 농업의 총체적인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생산요소(자원), 경영주체, 생산 품목 등을 재편하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농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투융자 지원 등 정부의 정책 개입이 필요함.
- 생산요소 구조조정: 농지나 가축 등 자원의 규모경제를 도모
- 농업경영체 구조조정: 경영능력이 우수한 경영체 육성
- 생산품목 구조조정: 시장수요와 국제경쟁력 있는 품목 중심으로 생산

3.2. 농업구조·경영정책의 성격 재정립

- 첫째, 구조·경영정책은 단기적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함.
- 시장 메카니즘에 맡겨 놓으면 완만하게 변화될 수밖에 없는 농업구조를 관련 정책수단에 의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그 성과를 얻기까지 10년 이상 또는 세대교체를 계기로 할 만큼의 장기간이 필요함. 더욱이 농업이 타산업과 대등한 생산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와 제도 개혁이 요구됨.

- 둘째, 사회적 저항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함.
 - 농업구조조정이란 궁극적으로 농지를 비롯한 고정적 생산요소를 재배분하거나 소득분배 구조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이해 관계가 대립할 수밖에 없음. 특히 토지이용권의 조정에는 많은 영세농가의 이농과 탈농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업의 시행에는 어려움이 뒤따르게 되며, 따라서 농촌사회에 내재한 전통적인 제도나 관습과 조화를 이루는 정책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만 성공을 기대할 수 있음.
- 셋째, 산업정책과 사회정책 등 관련 정책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 구조정책은 생산성 향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생산정책과 보완관계를 갖지만, 가격정책과는 상충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 특히 농산물 가격지지정책은 중소농을 온존시킴으로써 대농 층으로의 농지유동화를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구조변화를 둔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짐. 따라서 구조조정의 촉진을 위해서는 가격억제정책을 채택해 온 것이 선진국들의 경험임.

3.3. 농업구조·경영정책의 체계화

□ 농업의 기능을 분담하는 체계의 확립

- 농업의 국민경제적 기능은 국민의 식량공급, 국토자원 및 환경의 보전, 농촌인력의 고용과 소득기회 제공, 농촌사회의 규모와 기능 유지 등으로 구분되며, 이러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및 농가 유형별로 적절하게 역할을 분담해야 함.
- 예를 들어 식량안보 기능은 전업농가가 주도적으로 담당해야 할 기능이며, 따라서 농업진흥지역 안의 전업농가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경제적 효율성이 강조되지만, 진흥지역 밖의 겸업농가가 담당하게 되는 고용창출이나 농촌사회 유지 등의 역할도 중요함.

□ 다양한 경영주체를 육성하는 제도의 확립

- 우리 농업의 근간은 가족농(family farm)이며 앞으로도 가족농 체제가 유지될 것이지만, 농가 이외의 다양한 농업경영체가 서로 경쟁하면서 공존하는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함.
- 상속농가의 후계자뿐만 아니라 신규 인력이 창업농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산업자본과 기술이 원활하게 농업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생산조직을 적극 장려하고, 농업법인은 기업적 농업경영체로서 중소기업 수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며, 협업경영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생산·유통 과정에서 가족농과 협력하는 보완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가 정비되어야 함.

□ 농가 유형별로 정책수단을 차별화하는 “맞춤형농정” 확립

- 농업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농가의 발전유형별로 정책수단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러한 정책은 강제적이 아니라 정부가 제시하는 다양한 정책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농업인이 적절한 프로그램을 선택하면서 단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정책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함.
- 전업농과 겸업농은 농업정책의 주된 대상으로서 경영개선을 지원하고, 이농·탈농 희망농가에 대해서는 농외소득정책, 과도적 고령농가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정책 등으로 정책수단을 차별화해야 함.

3.4. 농업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전략

□ 농업의 범위를 농산업으로 확장

- 농업생산구조를 성장작목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농업의 범위를 1.5차 농산업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음.

- 농산물의 국내 소비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원료 농산물의 생산만으로는 농업소득 증대에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농산물의 저장·가공·유통을 연계한 부가가치의 창출은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임.
- 국내농업총생산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신수요·신시장 창출을 위한 대체작목 개발, 수확후처리기술 산업화 등과 아울러 해외수출시장 개척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함.

□ 지역농업 조직화와 리더 육성

- 농산업화는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가족농으로는 실현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품목 조직이나 지역 조직을 통하여 규모경제와 범위경제를 추구할 필요가 있음
- 품목별 조직과 기업적 영농이 활성화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및 CEO 육성이 중요함.
- 지방대학과 연구기관 등의 교육·연구 기능도 지역농업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함.

□ 가족농의 경영승계를 위한 취농 지원

- 만성적으로 부족한 젊은 농업경영자를 확보하기 위한 신규취농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 농업의 핵심인력으로 전문경영인 15만명 정도를 유지하려면, 생애주기(life cycle)를 30년으로 볼 때 연간 약 5천명의 후계인력이 진입되어야 함.
- 농가의 경영주와 후계자 및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을 책임있게 분담할 수 있도록 “1호 1법인” 설립을 장려하는 것도 바람직함.

□ 고령농업인에 대한 농정 차원의 사회보장대책 강화

- 농업경영의 은퇴제도를 확립하고, 농정 차원에서 고령농업인에 대한 사회보장적 지원을 강화해야 함.
- 각종 농업지원 시책에서 농업경영의 은퇴 연령(예: 65세)을 설정하고

농촌사회의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아감.

- 고령농업인의 유연하게 은퇴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 적용을 확대하고, 은퇴직불과 같은 사회보장대책을 강구해야 함.

참 고 문 헌

- 김정호 외, 『1990·1995·2000 농업총조사에 의한 농업구조 변화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
- 김정호, “농업구조의 쟁점과 진로”, 『한국농업경제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4.
- 김정호 외, 『농업구조조정과 시장개방의 관계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
- 김정호 외, 『농업부문 비전 2030 중장기 지표 개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
- 농림부, 『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6.
- 박현출, “농업부문의 구조조정 전략 및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중앙공무원교육원 고위정책과정 제출논문), 2004.
- 설광언, 『농업구조 전망과 농정 방향』, 한국개발연구원, 1994.
- 신기엽, 『농업구조 변화와 농업인력대책』, 농협중앙회 조사부, 2001.
- 이정환, 『농업의 구조전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7.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07』, 2007.1.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미 FTA 협상 결과에 따른 농업부문 파급영향』 (미발간자료), 2007.4.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국내보완대책(안)

I. 4.3 발표 농업부문 국내대책

II. 국내대책 추가·보완 방향

III. 부문별 대책(안)

1. 농가소득 향상
2. 품목별 경쟁력 향상 지원 확대
3. 단기 피해보전 장치 마련
4. 농촌 생활여건 개선

농 립 부
농업구조정책국

“농식품 세계일류, 농촌 Global Top 10”

I. 4.3 발표 농업부문 국내대책

- ◇ 수입증가로 인한 피해 발생시 피해보전 지원
- ◇ 피해 품목에 대한 경쟁력 강화 지원 병행
- ◇ 대외진출 확대 지원

1 수입증가에 따른 품목별 피해보전

- ① 한미FTA체결로 수입이 급증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품목별 소득감소분에 대한 직불금 지급
 - 대상 품목은 현행 키위, 시설포도에서 한미FTA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으로 확대
 - * (현행) 키위, 시설포도 → (추가 예시) 쇠고기, 감귤 등
 - 이해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대상 품목, 지급 요건 및 지급 수준 등을 추후 확정
- ② 한미FTA 체결로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는 품목별로 폐업지원금 지급
 - 대상 품목*은 이해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후 확정
 - * (현행) 키위, 시설포도, 복숭아
 - 폐업에 따른 구조조정 효과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 마련

⇒ 수입증가로 인한 품목별 피해에 대한 피해보전직불금, 폐업지원금 등 지급을 위하여

- ① 현행 FTA이행지원특별법령 개정(지원기간 등)하는 한편,
- ② 1.2조원 목표로 조성 중인 현행 FTA 이행지원기금을 확충

2

품목별 경쟁력 강화 지원

① 축산

- 축사시설 현대화를 통해 한우, 양돈, 가금 등의 생산성 향상
-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우수 축산 브랜드 육성, 축종 개량을 통한 품질 고급화
-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유통체계 확립을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

② 원예

- 원예전문 생산단지 육성 및 생산시설 현대화 등을 통해 수출 경쟁력 제고
- 브랜드 경영체 육성* 및 재배기법 혁신 등을 통해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고 마케팅 능력을 제고
 - * 선별·포장·가공 시설 지원, 컨설팅 및 기술 정보 등 지원
- 신품종 육성, 우수품종 보급 등 종자산업투자 대폭 확대

③ 곡물 및 임산물

- 식용콩은 생산우수단지를 중심으로 생산·가공·유통을 담당할 브랜드 경영체 육성
- 호두, 밤 등 임산물은 기계화 등 생산기반 정비 추진 및 친환경·안전 임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 보급

3 대외진출 확대 지원

- ☐ 농·축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구매·가공 자금 융자 및 수출 물류비 지원
- ☐ 수출유망 수산물 품목에 대한 유통체계 개선 및 기술개발 지원
- ☐ 농·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현지광고·관측·정보제공 지원 등

<향후 추진 계획>

- ☐ 농업·수산업 등 영향분석 결과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피해보전 방안을 관계부처별 마련
 - 피해예상 품목에 대한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 지원 대책도 병행 수립
- ☐ 'FTA이행지원특별법령' 개정
 -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기간 등 결정

Ⅱ. 국내대책 추가·보완 방향

〈 문제인식 및 정책여건 〉

- ◇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및 경쟁 심화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이로 인해 농가소득 감소 불가피
 - 소비자는 농식품의 품질과 안전성, 기능성 및 다양성 선호 추세
- ◇ 농촌을 국민의 삶의 공간으로 가꿔 인구의 균형배치 유도 필요
 - 농촌의 교육·복지여건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음



1 농가소득 향상에 중점을 두고 국내대책 보완

- 농가소득향상 수단은 ① 경영규모 확대, ② 품질·안전성 향상, ③ 생산비 절감, ④ 수출, ⑤ 직불금 확충 등이 있음

① 경영규모확대와 직불금 확충에 중점

- 경영규모 확대 여건 조성을 위해 「맞춤형 농정」 본격 추진
 - ◆ 고령농 경영이양 촉진, 취미농은 정책지원 배제
 - ◆ 규모화 된 가족 단위의 전업농 육성
 - ◆ 고령인력 은퇴에 대비 신규인력 양성
- 직불제가 농산물가격이 지금보다 더 떨어졌을 때, 실질적 농가소득 지지수단이 되도록 개편
 - ◆ 전업농에 대해서는 쌀직불을 통합한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 도입
 - ◆ 전업농의 소득안정(감축대상 직불)과 고령농 경영이양지원(허용 직불)을 구분해서 지원

② 경영규모 확대에 대비, 경영안정장치 강화

- 재해보험 확대, 전업농의 경영안정 지원 시스템 개선

③ 품질·안전성, 농식품산업 육성, 수출촉진, 생산비 절감 노력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

- 생산·유통 시설 현대화 및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

2 **품목별 경쟁력 향상 지원 확대**

- ☐ 한육우 : 품질고급화 및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
- ☐ 돼지 : 질병발생 억제 및 친환경 양돈기반 구축
- ☐ 가금 : 유통단계 위생수준 향상 및 수출 추진
- ☐ 낙농 : 개량촉진 및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 ☐ 과실 : 당도향상 등 품질고급화
- ☐ 채소 : 법인체 중심의 규모화를 통해 가격·품질경쟁력 향상
- ☐ 인삼 : 생산·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
- ☐ 콩·보리 : 브랜드 육성(콩) 및 대체작목 개발(보리)
- ☐ 임산물 : 구조조정 및 시설현대화

3 **단기적 피해보전장치 확충**

- ☐ FTA피해보전직불·폐업지원의 대상품목 확대 및 운용방식 개편

4 **농촌생활여건 개선**

- ☐ 교육·복지관련 비용부담 지속 완화 등

※ 농업·농촌 활력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제는 지속적인 발굴 및 부처협의 등을 통해 추가

Ⅲ. 부문별 대책(안)

1

농가소득 향상

가

경영규모 확대 및 직불금 확충

(1) 고령농 경영이양 촉진 방안

- ☐ 기존의 경영이양직불제를 확대 개편하여 은퇴하는 고령농(예 : 65세 이상)에게 생활안정자금 지원
 - 영농경력 일정기간 이상의 고령농이 농업에서 은퇴할 경우, 경영이양면적에 따라 매월 일정액을 지원
 - 은퇴시점부터 75~78세까지 최장 10년간 지급(현행 70세까지)
 - 대상농지를 진흥지역논에서 전체농지로 확대하고 텃밭가꾸기 등 일정면적(예 : 0.3ha이하) 영농 인정
 - 시행초기에는 생활안정자금과 기존 직불제(예 : 쌀직불제 등) 지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
- ☐ 고령 농업인이 은퇴 후 생활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일거리 창출 등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
 - 농림부, 농진청, 산림청, 농촌공사 등의 사업 중에서 고령 은퇴농에게 적합한 일거리 적극 발굴
 - * 경관개선 활동, 산불방지감시, 가축방역 활동, 농촌체험 가이드 등
 - 건강관리실·재가노인복지센터·체육공원 확충 등 복지서비스 개선
- ☐ 65세 이상 농업인의 노후생활자금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지를 담보로 하는 「농촌형 역모기지론」제도 도입 추진
 - 수명 연장, 시중금리 상승, 농지가격 하락 등으로 금융기관에 손해 발생시 정부가 보증하여 자금인출의 안정성 확보

(2) 전업농 중심의 규모화 및 경영능력 향상 지원

☐ 경영규모 확대와 시설장비 현대화를 적극 지원

- 토지 이용형 농업(쌀, 노지채소, 과수 등)은 농지은행을 활용, 농지 임대차를 통한 규모 확대 적극 알선
 - 규모화 사업을 농장단위로 확대, 농장매매·임대차 사업 신설
- 시설형 농업(시설채소, 화훼, 축산 등)은 시설 및 장비구입 자금 지원을 통해 사용 연수가 오래된 시설 보수·교체 유도
 - 전업농 중심으로 시설 현대화 자금 일부 보조 지원

☐ 신기술·경영능력 중심의 전문교육 강화

- 품종선택에서 마케팅까지 품목별 전문교육과 농가 재무관리 등 경영관련 컨설팅 강화
 - * 컨설팅 수혜농가 : ('06) 1,000농가 → ('10) 1,600 → ('13) 2,600
- 지역별 농업교육기관인 농촌지도조직·농협·대학 등이 연계하여 지역 경제품목의 고수익 실현을 위한 특성화 교육 실시
 - * 특성화교육 참여 시·군 : ('06) 10개 → ('10) 30 → ('13) 50

☐ 우수한 후계인력을 창업농으로 선발, 정책적 지원 집중

- 창업농 자금지원은 종전 1년내 지원방식에서 3년간 분산 지원방식으로 개편하고 금리인하 등 지원조건도 연차적으로 개선
- 농지 매입·임대차 알선 및 농기계 임대시 창업농 우선 지원

(3)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 도입 추진

〈 제도설계(안) 〉

- ☐ 농가에서 재배하는 **주요품목의 소득(조수입)의 합**이 과거에 비해 하락할 경우, 그 일부(예 : 80%)를 보전
 - 농가별 재배품목과 재배면적을 토대로 매년 농가별 기준조수입과 당해연도 조수입을 계산하고 그 차이의 일부 보전
 - 농가별 기준 조수입은 농가에서 생산하는 주요품목의 직전 5개년 단위면적당 평균조수입에 품목별 재배면적을 곱해서 산정
 - 당해연도 조수입은 농가에서 생산하는 주요품목의 당년도 단위면적당 평균조수입에 품목별 재배면적을 곱해서 계산
 - * 농가지급액 : (기준조수입 - 당해연도 조수입) × 보전비율(80%)
- 전체생산액이 많은 품목, 많은 농가가 상업적 목적으로 재배하는 품목 등을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대상품목에 포함
 - 농가는 소수이나 대규모로 생산하는 품목도 포함
-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70세 미만의 **준·전업농, 후계농, 창업농** 중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시행
 - 참여농가의 책임 있는 경영유도를 위해 기준조수입을 기준으로 일정액 납입토록 하고 재해보험(가축공제) 가입 유도
 - 농지를 소유하고 농산물 생산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대상에 포함

□ 대농과 소농 간의 소득불균형 해소, 저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구간별 농가당 지급상한 설정 검토

- 쌀 직불금,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지급상한 설정문제와 연계
- 농업법인은 생산에 참여하는 조합원 수에 따라 상한 설정
- 농가별로 소득안정 직불제를 계산할 때,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 이하로 생산되는 품목은 제외
 - * 예) 벼·일반 발작물·노지채소(0.3ha), 과수(0.2ha), 화훼·특작·시설(0.1ha), 한우·젖소(2마리), 돼지(200마리), 닭(5,000마리) 이하
- 농가단위 직불제에 쌀 직불을 통합하여 운용

□ '농가등록제'를 도입하여 농가단위 소득보전 추진 기반 마련

- 등록제 정착 후 시범사업 추진 등 검토·보완과정을 거친 후 추진 시기 결정
- 농가의 경영상태를 허위로 등록 할 경우 지원된 직불금을 회수하고 5년간 소득안정 직불 대상에서 제외

<사업시행체계(안)>



나 경영안정장치 확충

- ☐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농업분야 자연재해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위험관리체계 구축
 -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현행 7개에서 '11년까지 30개로 확대
 - 품목확대와 병행하여 품목별 특성에 따른 재해범위 확대 추진
 - '13년까지 가축공제 대상축종을 확대(15개)하고 운영 내실화
 - 가축공제사업자로 농협외에 민영보험사도 참여시켜 공제사업의 경쟁체제를 확립하고 서비스 확대 및 보험요율 인하 유도
 - 농작물, 가축, 시설 등 분야별 정책보험을 농업재해보험으로 일원화하여 종합적인 위험관리 프로그램으로 발전

- ☐ 자연재해, 농산물가격 급락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전업농의 경영회생 지원 시스템 개선
 - 경영위기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후 임대하는 방식으로 농가 회생지원 확대
 -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예산 : ('06) 422억원 → ('13) 1,200
 - 저리자금으로 경영정상화를 유도하는 경영회생자금 지원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 등 지원절차를 간소화

- ☐ 자조금 조성확대를 통한 자율 수급안정노력 강화
 - 중장기적으로 의무자조금제 도입 방안 검토

다 고부가가치 농업 육성

[1] 고품질·친환경 농식품 공급

- ☐ 우수 농식품브랜드를 중심으로 농식품 공급체계를 발전시켜 규격화, 균일화 등 품질경쟁력 향상
 - 브랜드 경영체 소속농가의 조직화·규모화 추진
 - * '17년까지 축산 80개, 원예 90개, 곡물 40개의 브랜드 경영체 육성
- ☐ 친환경농법의 확산을 지원하고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
 - 친환경농자재 지원확대, 직불제 단가인상 및 지급기간 연장(3 → 5년)
 - 집단화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및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 *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 : ('06) 3개소 → ('09) 17 → ('13) 50
 -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우수 경영체 육성 및 소비지 매장 설치 지원

[2] 생산·유통단계의 식품안전관리 강화

- ☐ 생산단계의 잔류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 조사를 확대하고 허용기준 초과농가에 대한 제재 강화
 - 축산물 잔류기준 초과시 출하금지, 과태료 부과 등 조치
- ☐ 유통단계에서는 선별·포장·가공·운송과정의 위생기준 강화
 - 신규 APC·RPC에 GAP위생 시설 설치 의무화
 - 축산물 HACCP 지정 확대 : ('06) 431개소 → ('13) 2,500
- ☐ 이력추적관리제, 원산지표시제 등 소비자 보호기능 확대
 - 수입농산물 원산지 표시품목을 확대하고 원산지표시제를 가공·포장단계에서 최종 소비단계인 음식점까지 확대

[3] 농식품 산업 육성

☐ 식품산업과 농업의 균형성장을 위한 연계강화 지원

- 외식·편의식품 소비증가 등 식품소비 패턴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전처리(신선편이) 식품공급 활성화 지원
 - 기능성·편이성 식품 등 고부가가치 식품개발 강화
 - * 농림기술개발사업의 식품가공연구를 확대('07~'11년까지 200과제 400억원)
- 생산자와 식품외식업체간 계약생산 및 직거래 활성화 유도
- 농업생산·가공·연구개발이 결합된 첨단농식품 클러스터 조성 추진('08~'14년간 1개소를 조성하고 이후 추가조성 검토)

☐ 전통음식, 향토식품을 중심으로 해외진출 확대 추진

- 한스타일, 한식(韓食) 및 우리 식문화의 세계화 지원
 - 해외 한식당 인증, 해외 조리사 초청교육, 한식의 우수성 홍보 등을 통해 한식 저변확대 및 우리 농식품 수출 확대
- 전통음식 조리법 표준화('08) 및 전통식품 국제 규격화(Codex) 등을 통해 우리 고유의 음식·식품의 국제화 도모

☐ 농식품산업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 추진

- 식품산업진흥법을 제정하여 식품제조·외식·식자재 산업의 기술개발, 인력양성, 통계체제 정비, 수출 지원 등의 근거 마련
- 식품규격기준 제정·인증 및 지리적 표시확대, 유기식품인증제 등을 통해 식품의 품질향상 도모

(4) 첨단 지식·기술 산업 육성

- ☐ **고부가가치 창출기술과 생명공학을 활용한 기술 중점 개발**
 - 친환경·안전성·수확후관리 등 영농·산업현장 필요기술 개발
 - BT·NT·IT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가축질병예방 경구용 백신, 형질전환 동·식물 등 농업생명공학분야 연구 확대
 - 첨단기술개발 연구는 Project 사업위주의 중대형 과제 지원 확대
 - '10년까지 농림R&D 투자를 농림예산의 5%수준으로 확대
 - '13년 농업생명공학 연구수준 세계 5위, 지적재산권 보유 세계7위 도약

- ☐ **세계 5위권의 품종개발강국 도약을 위해 종자산업 육성**
 - 신품종 육종, 우수품종 보급 등 종자산업투자 대폭 확대
 - * 종자산업육성 투자계획 : ('06) 978억원 → ('13) : 1,519
 - 최고 수준의 육종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고추·배추·무 등은 수출전 용품종 개발에 집중하여 역점수출산업으로 육성
 - '15년까지 세계 고추종자 시장점유율을 25%까지 제고(5천만불 수출)

- ☐ **바이오에너지 작물 및 기술 개발로 농가의 신소득원을 발굴**
 - 바이오에너지 원료작물을 '13년까지 10개 품목 개발하여 새로운 소득 작물로 활용
 -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효율적 연료화 공정 기술 개발 및 유기성 폐기물, 갈대, 벚집 등을 에너지화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 목질 바이오매스의 활용량 목표 : ('08) 200천 m² → ('13)600

(5) 농식품 수출 확대

☐ 농가소득 및 식문화 확산과 관련이 높은 30대 수출상품 집중 육성

- 시장조사, 상품화, 판촉지원 및 수입국 검역문제 해소 등 지원확대

* 1억불 이상 수출 농식품('13) : 김치, 인삼, 파프리카 등

※ 농식품 수출목표 : ('07) 25억불 → ('17) 50

☐ 전업농이 농산물 수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수출전문생산단지 지정을 확대하고 선별·포장 등 시설현대화

* 수출단지 지정 : ('06) 148개소 → ('10) 180 → ('13) 200

- 수출용 농산물 재배기술 및 해외시장 정보 제공 강화

- 생산·유통 해외전문가로 구성된 '해외기술지원단' 운영 확대

- 수출유망품목을 공급하는 수출전문 생산자조직을 육성 하고 우수 수출업체와 계약재배 등을 통한 안정적인 판로 구축

☐ 재외공관,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 등의 협력체제 강화

- 전세계 130여개 재외공관을 농식품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

- 재외공관이 참여하는 한국식문화 홍보 행사를 개최하고, 재외공관이 운영하는 통상지원반에 해외 aT센터, 농협 등 참여

* 농식품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농림부와 외교통상부간 업무협력 양해각서 체결('07.4.26)

- 유통공사의 현지 시장정보수집, 검역, 통관 등 역할 강화

☐ 농식품 수출시장을 유형화하여 특성에 맞는 수출마케팅 집중

- ◆ 주력시장(일본, 중화권) : 신선농산물, 대형유통업체 판매망 확보
- ◆ 개척시장(미주, 러시아, 아랍) : 가공식품, 식품·식문화 홍보 강화
- ◆ 잠재시장(유럽·남미·인도) : 가공식품, 마켓테스트(박람회참가 등)

2 품목별 경쟁력 향상 지원 확대

가 축산 분야

< 미래 모습 >

◇ '17년에는 축산전업농 25천호가 사육의 87%이상을 담당

- 브랜드 및 계열업체 중심으로 품질 고급화 및 유통 개선 실현

	2006년	2010년	2013년	2017년
◆ 전업농수(천호)/생산 비중(%)	16/66	20/75	24/82	25/87
○ 한우(50두 이상)	7.2/34.5	10.6/51.0	12.9/66.6	13.1/68.8
○ 돼지(1천두 이상)	3.1/80.0	3.6/88.0	4.1/92.0	4.8/96.0
○ 닭(3만수 이상)	1.5/75.8	1.8/78.8	2.1/81.1	2.5/84.3
○ 낙농(50두 이상)	4.4/73.9	4.6/83.1	5.0/90.0	5.3/99.5
◆ 축종별 주요 비전				
○ 한우 1등급 이상 출현율(%)	44.5	50.0	55.0	60.0
○ 돼지 브랜드 경영체 사육비중(%)	51.0	64.0	70.0	80.0
○ 육계 계열화비율(%)	72.0	76.0	79.0	83.0
○ 우유 1등급(체세포수)비율(%)	50.3	75.1	84.0	96.1
◆ 농가수(천호)				
○ 한 우	190	143	131	126
○ 돼 지	11.3	9.7	8.4	6.8
○ 닭	3.6	3.2	2.1	2.9
○ 낙 농	8.2	7.3	7.0	6.7
◆ 사육두수				
○ 한 우(천두)	2,020	1,989	1,850	1,822
○ 돼 지(천두)	9,382	9,133	8,854	8,482
○ 닭(만수)	11,918	12,243	13,012	13,785
○ 낙 농(천두)	464	453	441	427

한육우

- ☐ 한우 송아지 가격하락에 대비, 송아지생산 안정기준가격 조정
 - 현재 130만원인 안정기준가격을 155만원으로 상향 조정

- ☐ 우수 브랜드 육성 및 개량·사육기술 개선을 통해 세계 최고 품질의 한우고기 생산
 - 브랜드 경영체 또는 브랜드 참여농가 위주로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브랜드 출하비율을 향상
 - * 브랜드 사육비율 : ('06) 32.2% → ('13) 50 → ('17) 60
 - 공동사육시설, 브랜드육타운 조성 등으로 브랜드 광역화·규모화 추진
 - 인공수정 확대 및 고급육 생산기술 전수로 품질 고급화 진전
 - * 쇠고기 1등급 이상 출현율 : ('06) 44.5% → ('17) 60

- ☐ 소 값 하락분을 사료비 및 송아지 구입비 절감 등으로 극복
 - 대규모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 및 총체보리 전용품종 보급 확대로 사료비 부담 감소
 - 송아지 자가 생산을 확대하고 적기 인공 수정으로 생산율 개선

- ☐ 둔갑 판매 방지, 위해요소 차단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등 수입산과 차별화
 - '08년부터 쇠고기 이력 추적제를 한육우 전두수 대상으로 실시
 -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단계적 확대 및 지속 강화
 - * '07년부터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구이용 쇠고기 취급 음식점에 적용

돼 지

- ☐ **우량 종돈 선발 및 우수 양돈 브랜드 육성으로 고품질 돈육 생산·유통시스템 구축**
 - 모돈 100두 이상 **종돈장 10개소**를 선정, 「**돼지개량 Network**」를 구축('08)하여 집단 유전 능력평가를 통한 우량 종돈선발
 - 30여개의 우수 양돈 브랜드 경영체를 중심으로 '**17년까지 브랜드 비중을 80%까지 확대('06 : 51%)**
 - 운송과정에서 품질저하 방지등을 위한 **생축 운반차량 지원**
 - 브랜드 경영체 대상으로 연간 60대 공급 지원

- ☐ **축사 시설 현대화 및 소모성 질환 방역으로 생산성 향상**
 - 브랜드 참여 농가에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 등 지원 강화
 - 지역별 소모성 질환 **전문 자문단 운영**을 통해 질병발생 최소화
 - * 모돈당 출하두수 : ('06) 13마리 → ('17) 20

- ☐ **분뇨감축 및 퇴액비 이용 활성화로 친환경 양돈산업 기반 조성**
 - '12년 축산분뇨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하여 **연간 40만톤씩 단계적 감축** 추진 (총 200만톤)
 - 가축밀집사육 지역이나 중·대규모 양돈농가가 많은 지역에 가축분뇨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동자원화시설 설치**
 - * '07년 5개소 시범설치, '08년부터 연간 10개소로 확대

가 금

- 육계 우수브랜드 인증 및 닭 계열화업체 사육비율 확대
 - 계열업체 중심으로 가금 운반 전용 차량 운영 추진
 - * 계열화 사육비율 : ('06) 72% → ('13) 79 → ('17) 83
- 사육단계 HACCP 도입('08)으로 국산 가금육의 신뢰도 제고
- 닭·오리고기의 포장유통 의무화를 전체 도축작업장으로 확대('09)
 - 하고 작업장 명칭을 표시하여 수입육과 구분 유도
- 삼계탕 등 멸균제품을 수출 품목으로 집중 육성
- 종계 유통관리 방법을 개선하여 우량 종계 유통질서 확립
 - 종란과 병아리 혈통인증서 발급 의무화 및 종계장·부화장 점검 강화

낙 농

- 젖소개량의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육종농가 제도 도입('08)
 - 규모화된 우수 검정농가를 육종농가로 선정(400호 20천두)
 - 유전자원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홀스타인 외 다른 품종 도입
- 낙농 장비 및 시설 현대화로 관리비 절감 도모
- 사료작물·축체보리 기반시설 및 조사료 유통시설 지원 등 강화
- 목장단위 낙농 체험·관광산업 지원으로 우유소비촉진 도모

나 원에 분야

< 미래 모습 >

- ◇ **과수** : 브랜드 경영체 30개와 기술농업을 실천하는 전업농 24천호를 육성하고 생산량의 60%이상 전담
 - 브랜드 경영체 육성 : ('07) 8개소 → ('13) 21 → ('17) 30
 - 1.5ha이상 전업농 : ('07) 19천호 → ('13) 22 → ('17) 24
 - * 전업농 생산비중 : ('07) 39% → ('13) 50 → ('17) 60
- ◇ **채소** : 규모화·조직화된 브랜드 경영체 50개를 육성하고 전업농 생산비중을 55%이상으로 확대
 - 브랜드 경영체 육성 : ('07) 2개소 → ('13) 44 → ('17) 50
 - 0.7ha이상 전업농 : ('07) 15천호 → ('13) 18 → ('17) 20
 - * 전업농 생산비중 : ('07) 10.3% → ('13) 37 → ('17) 55
- ◇ **인삼** : 주산지 권역별 전문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수출확대
 - 전문생산단지조성 : ('07) - 개소 → ('13) 21 → ('17) 30
 - 전업농 육성 : ('07) 0.7천호 → ('13) 1.4 → ('17) 2
 - * 수출목표 : ('07) 89백만\$ → ('13) 200 → ('17) 500
- ◇ **화훼** : 생산·유통·수출이 결합된 브랜드 경영체 육성 및 국산 우수품종 보급 확대
 - 브랜드 경영체 육성 : ('07) - 개소 → ('13) 6 → ('17) 10
 - 국산 우수품종 보급 : ('07) 1% → ('13) 10 → ('17) 25

과실류

- 과수묘목관리센터를 설치, 6개 과종의 우량묘목 공급
 - * 취급품목 확대 : ('07상) 사과·포도 → ('07하) 복숭아, 단감, 배 → ('08) 감귤
- 품질평가기준에 당도 기준 강화 및 표시 의무화
 - 3년간('08~'10) 실태조사를 거쳐 당도측정방법 및 표시기준 마련
 - * 현행 품질 기준 : 고르기, 산도, 섹택, 당도, 크기에 따라 특·상·중·하로 구분
- 주산지를 중심으로 우수 브랜드 경영체 육성을 추진하고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지원('07 : 15개소 → '13 : 25 → '17 : 30)
 - 브랜드 경영체에 품질관리, 마케팅 운영, 홍보비 등 지원
 - * 우수브랜드 경영체 : 연중 안정적인 농산물 출하가 가능하도록 농가조직화, 일정규모이상의 재배면적과 유통시설을 확보한 법인 등
-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해 기존 전업농을 중심으로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 감귤은 다공질필름 재배 면적 확대('06 : 5% → '13 : 20 → '17 : 38)
 - 사과는 저생산성 과원을 키낮은 사과원으로 전환('06:18%→'13:37 →'17:62)
 - 배·복숭아는 밀식과원 재배면적 확대('06:배 48%, 복숭아 15% →'13:70,46→ '17 : 89, 62)
 - 포도는 비가림시설 재배면적 확대('06 : 52% → '13 : 65 → '17 : 82)
 - * 비가림시설 재배 효과(포도) : 약제 살포(13→ 5회), 당도(13.7→ 14.4bx)
- 비상품 과실을 가공용 등으로 활용하는 다양한 지원방안 강구
- 과실 소비촉진을 위한 시장개척, 박람회 정기 개최 등 추진
 - 국산 과실의 기능성·우수성을 집중 홍보하고 직판행사·시식회 개최

채소류

- 브랜드 경영체 육성을 통해 고품질 채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생산·유통시설 개·보수 지원(신규농가는 원예전문생산단지에 한정)
 - 브랜드경영체에 생산·유통시설 지원, 전업농들이 공동 이용
 - * 우수브랜드 경영체 육성 : ('07) 2개 → ('13) 44 → ('17) 50
- 고추·마늘·양파 계약재배 면적 지속 확대('06 : 11% → '13 : 30 → '17 : 40)
- 생산자 및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우량 품종 개발·보급
 - 고추는 기계화에 적합한 신품종을 개발하여 생산비절감 도모
 - 마늘은 주산지 중심으로 종구 갱신을 확대('06 : 40% → '13 : 60 → '17 : 70)
 - 양파는 수입대체용 중·만생 신품종을 조기에 육성

인삼

- 인삼계열화사업을 확대하여 재배과정의 이력관리 추진
- 생산·유통시설이 현대화된 인삼 수출전문단지 신규 육성
 - * 인삼 수출단지 육성 : ('08) 2개소 → ('13) 15 → ('17) 30
- 병해충에 강한 신품종 및 대량증식기술 개발·보급
 - * 신품종 육성 보급 : ('07) 5개 → ('13) 8 → ('17) 10
- 인삼재배 기계화율을 높여 생산비 절감('06 : 40% → '13 : 50 → '17 : 70)
 - 인삼방제기, 수확기 등 신제품의 현장적용연구 후 보급 추진

다 식량 분야

< 미래 모습 >

◇ **콩** : 브랜드 경영체 20개와 안정적 생산·공급을 위한 계약재배로 유통량의 50%이상 전담

- 전작브랜드 경영체 육성(콩) : ('08) 4개소(1) → ('13) 40(20) → ('17) 40(20)
- 계약재배물량 : ('10) 10% → ('13) 26 → ('17) 40

◇ **보리** : 대체작물 재배를 통한 생산량의 적정 감축

- 보리 재배면적 : ('06) 33천ha → ('13) 20 → ('17) 20
- 총체보리 재배면적 : ('06) 9천ha → ('13) 100 → ('17) 110

콩 · 감자

- 생산 우수단지를 중심으로 재배에서 수확 후 관리단계까지 종합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고품질 브랜드 경영체 육성
 - 브랜드 경영체의 고품질 콩 생산·유통·가공에 필요한 시설·장비, 교육·홍보 및 운영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
- 정부와 농협이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계약재배 사업 추진
 - 생산자는 생산에만 전념하고, 판매는 농협이 책임지도록 이원화하고 계약재배 물량의 손실을 보전
 - * 콩 계약재배 물량 : ('10) 20천톤 → ('13) 50 → ('17) 80
 - * 감자 계약재배 물량 : ('10) 20천톤 → ('13) 120 → ('17) 240

보 리

- 식용보리를 사료작물(총채보리)과 에너지 작물로 점진적 대체
 - 총채보리용 종자공급을 '15년까지 전체소요량의 100% 수준 확대
 -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07~09년) 추진 후 확대
- 수매물량·매입가격의 점진적 조정으로 생산량 적정 감축
 - * 쌀보리 매입가격 : ('06) 35,690/40kg → ('11) 27,320

라 임산물 분야

< 미래 모습 >

◇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기반 확충 및 국산목재 공급 확대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액 : ('07) 1.9조원 → ('13) 2.8조원 → ('17) 3조원
- 국산 목재 자급율 : ('07) 8.8% → ('13) 14% → ('17) 15%

□ 안전성 강화 및 품질 고급화를 통해 수입산과 차별화

- 우수브랜드 중심의 유통체계 개편 및 품질인증제도 도입
 - * '08년 이후 연간 10개소 내외로 GAP 인증 지원

□ 호도·밤 등 단기소득 임산물은 소득 기반 정비 및 유통구조 개선

- 호도·밤의 집약적인 관리를 위해 재배면적 구조조정 추진
 - * 1만ha 구조조정을 목표로 연간 1천ha씩 10년간 추진('08~'17)

□ 목재류는 산주의 목재생산·유통 촉진에 필요한 기반조성 지원 등을 통해 목재의 안정적 생산 및 유통체계 개선

3

단기 피해보전 장치 마련

가 FTA피해보전 직접지불 개편

- ☐ FTA이행지원특별법(제5조)의 피해보전직불금 대상 품목을 현재 키위, 시설포도에서 **한미FTA로 피해를 입는 품목으로 확대**
 - * 대상품목 : (현행) 키위, 시설포도 → (확대)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는 품목

- ☐ 수입량이 일정비율이상 증가하고, 당년도 가격이 기준가격이하로 하락 시, 기준가격과 당년 평균가격 차이의 일정비율을 보전
 - 기준가격은 현재수준(과거 5개년 평균의 80%) 유지하고 피해보전비율은 **현행 80%에서 상향 조정(쌀 변동직불제 : 85%)**
 - 다만, 피해보전직불금 산정방식은 소득보전취지 등을 고려, 현재의 가격기준에서 **단위면적당 조수입(생산액) 기준으로 변경**
 - 세부적인 발동요건, 단위면적당 조수입 산정의 통계자료 등은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화**
 - 지원기간은 한칠레FTA를 준용하여 협정발효 후 7년으로 설정

- ☐ **품목별 재배면적(사육두수) 조사, 관련통계 정비 등 준비 및 사후관리를 위해 농관원에서 추진하는 방안 검토**
 - * EU, 일본, 미국 등 대부분 선진국은 직불제 담당기구를 중앙정부 직속 기구로 설치(전국적으로 통일성과 일관성 필요)

나 폐업지원제도 개선

- ☐ 대상품목은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품목 선정 기준을 준용하여 확대(FTA이행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7조)
 - 다만, 고정투자가 이루어진 후 장기간에 걸쳐 생산이 이루어지는 품목에 한정
 - * 현행 대상품목 : 키위, 시설포도, 복숭아
 - 피해보전직불제와 달리, 폐업지원의 사후적인 구조조정효과를 감안하여 발동요건에 해당하는 품목은 폐업지원제도 잔여 운영기간 동안 지원
- ☐ 과도한 신청수요를 억제하고 폐업에 따른 구조조정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지급방식 개선
 - 동일 품목내에서 폐업지원과 신규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 수급불안 등의 문제가 지속되지 않도록 지급조건 개편
 - * 폐업자금을 지원받은 농가는 정부에서 정한 폐업대상품목의 경쟁력 제고 지원대상에서 영구 제외 검토
 - 폐업지원금 지원기준 및 농가당 지원금 산출방식 등은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화
 - * 現 농가당 폐업지원금 : 폐원면적 × (단위면적당 소득 - 자가노력비) × 3년
- ☐ 폐업지원금 지원기간은 협정발효 후 5년으로 설정

4

농촌 생활여건 개선

가 교육·복지 분야 지원 확대

☐ 농업인의 보육·교육비 부담경감 확대

-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를 '13년에 정부보육료의 75% 수준(연평균 2,053천원)까지 지원('06 : 1,333천원)
 - 농촌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 ('06) 282개소 → ('13) 600
- 농촌출신 대학생에게 학자금 무이자 융자지원을 확대
 - * 학기당 융자금 지원(수혜자) : ('06) 271만원(25천명) → ('13) 381(32)
- 농촌출신대학생의 하숙자취비 등 생활비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 및 각도에 「농촌대학생 기숙사」 건립(총 10개)

☐ 농업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지원

- 국민연금보험료 지원기준인 표준소득월액을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13→18등급)하고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형평성 제고
 - 농업인의 농업외 소득, 재산 등에 따라 건강보험료 경감 차등화 (0~50%)
-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 농업인의 사고시 보상수준 상향
 - * 재해로 사망시 지원액 : ('06) 2,500만원 → ('13) 9,000(산재보험 수준)
- 취약농가에 대한 영농도우미 및 가사도우미 지원 확대
 - * 영농도우미 지원대상 : ('06) 65세 이상, 3ha 미만 → ('13) 전 농가

☐ 농촌의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 재가노인복지센터를 확충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가구에 가정봉사원 파견 및 주간노인보호 추진('07 : 86개소→'13: 195)
- 농촌마을 건강관리실, 응급 의료기관·보건소 등 지속 확충
 - * 건강관리실 : ('07) 192개소 → ('13) 1,342

나 농촌자원의 산업화 및 일자리 창출

- 향토자원을 발굴·육성하여 지역별로 특성화된 농촌산업 진흥
 - 시범사업('07)을 거쳐 '13년까지 200개 향토자원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지역 향토자원을 활용한 특화단지 조성('13 : 200개)
 - 낙후지역(70개 시·군)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당 20-30억원을 지원하는 신활력 사업은 농촌산업 진흥 시책으로 사업개선
 - 지역별 농촌산업이 발전하도록 컨설팅 해주는 지원체계 구축
 - ※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농촌산업 육성사업을 통합하여 지원

- 농촌체험·휴양기반을 확충하여 농촌관광산업 육성 지원
 - '13년까지 670개소의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확대
 - 농업·농촌테마공원('07 : 4개소 → '11 : 24)을 조성하고 농로, 임도 등을 활용한 농촌형 승마모델 정립·보급
 - '(가칭)도농교류촉진법' 제정 추진('08년 시행)
 - 농촌체험마을의 음식제공·농산물 판매 관련 특례, 도시민 현장체험, 농촌체험 지도사 및 초·중등학생들의 농촌체험교육 근거 마련

- 농촌지역 실정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적극 창출
 - 지역내 노인 요양, 보육 등에 필요한 인력운영비 지원
 - 주민들의 자율적 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경비 일부 지원
 - 마을사무장제 확대, 농촌관광 해설사 제도 도입, 농촌마을리더 육성 등 농촌에서 필요한 사회적 일자리 확대

다 거점마을 개발 및 농촌거주환경 개선

-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통해, 면소재지와 배후 중심마을에 생활 편의·문화·복지시설 등을 확충하여 **선도 거점으로 육성**
 - * 거점마을 개발(면소재지 포함) : ('07) 136개소 → ('13) 496
- ☐ 정주권개발과 오지개발사업은 '**농촌정주여건개선 사업**'으로 통합하여 생활여건이 열악한 낙후면 중심으로 지원
 - 면단위에서 필요한 기초생활환경 개선사업에 초점을 두어 추진
- ☐ 주택, 상·하수도 등 **농촌 주거환경 개선지원 확대**
 - 농촌주택정비 **융자금액 한도**를 확대(4,000만원 → 8,000)하고, 금리를 3%수준으로 인하(주택개량 : ('07) 5.6천동 → ('13) 32.6)
 - **농촌형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농촌저소득계층의 주거 지원
 - * 농촌형 임대주택 공급 : ('08) 160 세대 → ('13) 2,840
 - 면단위·마을단위 상수도 등 확충을 통한 깨끗한 식수 공급
 - * 마을단위 생활용수시설 지원 : ('06) 5,364개소 → ('13) 7,398
- ☐ **농촌경관·환경 보전**을 통해 쾌적한 농촌공간 조성
 - 농촌경관지표를 적용한 경관맵 작성 후 농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先농촌경관계획-後사업시행**' 체계를 시범 사업 후 구축 추진
 - 경관보전직불제를 대폭 확대하고, 주택, 마을안길, 담장 등 정비
 - * 경관보전활동 직불제 : ('08) 100개 마을 → ('13) 1,000

참고자료 : 한·미FTA 농업부문 협상결과

1 한미 FTA 협상 경과

- 한미 FTA협상은 '06.2월 협상출범 선언 후 금년 4.2일 협상 종결
 - 제1차('06.6), 제2차('06.7) 협상에서는 양측의 농산물 무역 관련 주요 제도 및 기본입장에 대해 의견 교환
 - 상품, 농업, 섬유 분야 1차 양허안 일괄 교환('06.8.15)
 - * 예외적 취급 대상인 미정(Undefined) 품목을 280개로 제시
 - 제3차('06.9) 협상부터 본격적으로 품목양허에 대한 논의 시작
 - 제4차('06.10) 협상에서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품목을 중심으로 수정 양허안을 교환하고, 농업분야 통합협정문 작성
 - 약 500여개 품목을 제외하고 양국간 의견 접근(미정품목 235개로 축소)
 - 통합협정문은 양측 주장을 병기하여 나열
 - 제5차('06.12), 제6차('07.1), 제7차('07.2) 협상에서는 주요 민감 품목의 양허방향에 대해 의견 교환
 - 약 300여개 품목 외에는 의견이 접근되었으나, 주요 품목에 대한 입장 차이로 수정양허안 교환은 없었음
 - 고위급협의('07.3, 2회), 제8차('07.3) 협상에서 민감품목을 포함한 미합의 품목의 양허방향을 논의했으나, 실질적 진전이 없었음
 - 미측의 “예외없는 관세철폐” 주장에 대해 “민감품목의 예외인정”을 강도 높게 요구
 - 최종 협상('07.3.26~4.2)에서 그동안 논의한 대안을 바탕으로 주요 핵심 품목의 양허방향을 확정하고 협상을 종결
 - 현재 협정문의 법률적 검토 및 문안정리, 양허안 최종확인 등 협상결과를 공식 서명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

2 | 농산물 양허협상 결과

가 | 우리측 농산물 양허개요

- ☐ 농산물 양허협상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예외적** 취급 범위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
 - 미측은 협상 초기부터 일관되게 “예외 없는 관세철폐”를 주장
 - 우리가 체결한 여타 FTA에 비해서는 양허수준이 높으나 다양한 예외적 취급 방안을 확보하여 충격 최소화에 주력
 - 양허제외, 수입쿼타(현행관세 유지), 계절관세, 세번 분리, 농산물 세이프가드 등

- ☐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 양허제외, 현행관세 유지, 계절관세 도입, 세 번 분리,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 등 **예외적** 취급과 함께 **15년 이상의 관세철폐 기간을 확보**
 - 민감도가 낮은 품목은 **즉시**에서 **10년**까지 철폐기간 차별화
 - 국내 영향이 없거나 이미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 국내 수입수요가 거의 없는 품목은 관세를 **즉시 철폐**
 - 산동물, 원피, 종축, 화훼류, 커피, 포도주, 밀, 사료용 옥수수, 채유용 대두 등
 - * 품목수 기준 약 38%, 수입액 기준 약 56%
 - 미측 관심도가 높은 오렌지쥬스(냉동), 포도쥬스는 신선 오렌지, 포도에 대한 민감성 반응을 위해 불가피하게 즉시철폐로 양허

<우리측 농산물 양허안 개요>

양허 유형	품목수	비중	수입액 (천불)	비중	주요 품목
양허제외	16	1.0%	25,555	0.9%	쌀
현행+TRQ	15	1.0%	209,334	7.0%	오렌지(성출하기), 식용대두, 식용감자, 탈지·전지분유, 연유, 천연꿀
17, 계절관세	1	0.1%	4,099	0.1%	포도
15, 계절관세	0(1)	0.1%	0	0.0%	칩용 감자
18+TRQ	4	0.3%	1	0.0%	인삼(수삼, 백삼의 본삼·미삼·잡삼)
15+TRQ	5	0.3%	93,474	3.1%	치즈, 사료용 근채류
12+TRQ	6	0.4%	8,370	0.3%	보조사료, 변성전분
10+TRQ	4(8)	0.8%	3,233	0.1%	버터, 조제분유(유아용), 유장(식용), 체다치즈
20	0(2)	0.1%	0	0.0%	사과(후지), 배(동양배)
18	3	0.2%	0	0.0%	홍삼(본삼·미삼·잡삼)
16	2	0.1%	1,057	0.0%	설탕
15	103(2)	6.8%	353,289	11.8%	육우, 쇠고기, 계란, 녹용, 녹각, 고추, 마늘, 양파, 생강, 표고버섯, 키위, 맥주맥, 보리, 호두(미탈각), 감귤, 녹차, 밤, 잣, 참깨, 참기름, 주정, 전분, 혼합조미료 등
12	34	2.2%	13,504	0.5%	젓소, 닭고기(냉동가슴살, 냉동날개), 난황(건조, 기타), 냉동양파, 수박, 멜론 등
10	332	21.4%	121,840	4.1%	산 돼지, 복숭아, 감, 단감, 감귤쥬스, 사과쥬스(브릭스 20 이내), 잎담배, 자두, 로알젤리, 인조꿀, 닭다리(냉동), 돼지고기(냉장 삼겹살·목살·갈비 등), 고구마, 사과(후지 제외), 배(동양배 제외), 찐쌀, 쌀의 배아, 송이·느타리·팽이·영지버섯 등
9	1	0.1%	0	0.0%	신선딸기
7	41	2.6%	59,293	2.0%	맥주, 아이스크림, 살구, 팥콩용 옥수수, 옥수수(가공용), 포도(조제저장처리), 사과(조제저장처리), 사과쥬스(브릭스 20 초과) 등
2014.1.1까지	21	1.4%	57,689	1.9%	돼지고기(냉장 도체 및 이분도체, 냉장 전·후지, 냉동육, 설육, 가공품)
6	2	0.1%	13,070	0.4%	옥수수유(기타), 호두(탈각)
5	317(2)	20.6%	347,007	11.6%	오렌지쥬스(냉장), 토마토쥬스, 크랜베리 쥬스, 자두쥬스, 완두콩, 감자(냉동), 위스키, 스파케티, 국수, 당면, 냉면, 인스턴트 커피, 간장, 고추장 등
3	33	2.1%	66	0.0%	해조류 등
2	6	0.4%	6,921	0.2%	아보카도, 레몬, 프룬(건조자두), 콜라베이스 등
즉시 철폐	585(2)	37.9%	1,665,517	55.8%	오렌지쥬스(냉동), 포도쥬스, 산동물, 중축, 원피, 면화·마 등 섬유 원료, 화훼류, 커피, 포도주, 밀, 사료용 옥수수, 대두(채유용, 장류제조용), 사료용 완두 등
계	1,531(17)	100%	2,983,317	100%	

* () 안 품목은 세번 분리된 품목

(1) 예외적 취급의 구체적 내용

- ☐ [양허제외] 쌀 및 쌀 관련 제품(16개 세번)은 완전제외
- ☐ [현행관세 유지, 수입쿼타] 국내외 가격차가 크거나 관세율이 높아 관세를 완전히 철폐할 경우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품목은 현행 관세를 유지하고, 일정물량의 수입쿼타 제공
 - 식용대두, 식용감자, 분유, 천연꿀, 오렌지(성출하기)
- ☐ [계절관세] 민감품목 중 수확·유통 기간이 비교적 뚜렷하게 구분되는 품목은 우리나라 수확·유통 기간에 집중적으로 보호
 - 포도(5월~10월 15일), 오렌지(9월~2월), 칩용감자(5월~11월)
- ☐ [세번 분리] 양국의 주력 품종이나 용도가 구분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주로 생산되는 부분을 집중 보호
 - 사과 : 후지는 20년간 관세철폐(23년 세이프가드), 기타 품종은 10년간 관세철폐(10년 세이프가드)
 - 배 : 동양배 품종은 20년간, 기타 품종은 10년간 관세철폐
 - 감자, 대두 : 식용은 현행관세 유지, 가공용은 관세철폐
- ☐ [농산물 세이프가드] 수입량이 일정물량 이상으로 급증하면 관세를 추가 부과하여 국내시장 보호
 -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보리 등

(2) 주요 품목별 양허 내용

식량 분야

- ☐ 식용 대두(487%) : 현행관세 유지, 수입쿼타 제공
 - 수입쿼타는 1년차 10천톤, 2년차 20천톤, 3년차 25천톤 4년차부터 매년 복리 3% 증량
 - ※ 사료용, 장류제조용 대두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므로 즉시 철폐
- ☐ 식용 감자(304%) : 현행관세 유지, 수입쿼타 제공
 - 수입쿼타는 3,000톤에서 매년 복리 3% 증량
 - ※ 칩용 감자는 계절관세를 적용하여 관세철폐
- ☐ 보리, 맥주맥 · 맥아 : 15년 철폐, 세이프가드, 수입쿼타 제공
 - 겔보리(324%), 쌀보리(299.7%) : 2,500톤에서 매년 복리 2% 증량
 - 맥아(269%), 맥주맥(513%) : 9,000톤에서 매년 복리 2% 증량

채소 · 특작, 과일 분야

- ☐ 채소 · 특작류
 - 고추(270%), 마늘(360%), 양파(135%), 생강(377.3%), 참깨 · 참기름(630%), 땅콩(230.5%) : 15년 철폐, 18년 세이프가드
 - 인삼(222.8~754.3%) : 수삼, 백삼, 홍삼 등 7개는 18년 철폐 및 20년 세이프가드, 여타 품목은 15년 철폐 및 18년 세이프가드
- ☐ 과일류
 - 오렌지(50%) : 계절관세, 현행관세 유지, 수입쿼타 제공

- 성출하기(9~2월) 현행관세 유지, 수입쿼타(2,500톤, 매년 복리 3% 증량)
- 비출하기(3~8월) 30%에서 시작하여 7년 철폐
- 사과(45%) : 세번 분리, 철폐기간 차별화, 세이프가드
 - 후지는 20년 철폐(23년 세이프가드), 기타 품종은 10년 철폐(10년 세이프가드)
- 배(45%) : 세번 분리, 철폐기간 차별화
 - 동양배 품종은 20년 철폐, 기타 품종은 10년 철폐
- 포도(45%) : 계절관세
 - 성출하기(5월~10.15) 17년 철폐
 - 비출하기(10.16~4월말) 24%에서 시작 5년 철폐
- 감귤(144%), 키위(45%) : 15년 철폐
- 복숭아·단감(45%), 감(50%) : 10년 철폐

☐ 견과류

- 호두 : 미탈각(45%) 15년 철폐, 탈각(30%) 6년 철폐
- 잣(566.8%), 밤(219.4%) : 15년 철폐
- 아몬드(8%), 피스타치오(30%) : 즉시철폐

축산 분야

☐ 쇠고기(40%) : 15년 철폐

- 대미 수입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6개 세번은 세이프가드 적용

☐ 돼지고기(22.5~25%)

- 향후 수입 증가 가능성이 높은 냉장육(삼겹살, 갈비·목살 등) 2개 세번은 10년 철폐 및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

- 여타 세번은 2014년 1월 1일까지 철폐

- ☐ 닭고기(18~20%) : 10~12년 철폐

- 냉동 닭가슴살, 닭날개는 12년 철폐

- ☐ 천연꿀(243%) : 현행관세 유지, 수입쿼타 제공

- 수입쿼타는 200톤에서 매년 복리 3% 증량

- ☐ 탈지·전지분유(176%), 연유(89%) : 현행관세 유지, 수입쿼타 제공

- 수입쿼타는 5,000톤에서 매년 복리 3% 증량

- ☐ 치즈(36%) : 체다치즈 10년 철폐, 나머지 15년 철폐, 수입쿼타 제공

- 수입쿼타는 7,000톤에서 매년 복리 3% 증량

나 미국측 농산물 양허개요

□ 미측은 자국의 모든 농산물 관세를 15년 이내 완전 철폐

○ 품목수 기준 96.4%, 대미 수출액 기준 99.98%를 10년 내 철폐

* 미국 농산물 평균관세율은 9.4%로 우리의 52.9%와 비교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

□ 대미 주요 수출품목 및 수출 유망품목은 대부분 즉시철폐

○ 라면(6.4%), 배(0.2%), 음료(0.2%), 쌀로 만든 주류(0.5%), 추잉검(4%), 간장(3%), 된장·고추장(6.4%), 삼계탕(6.4%), 김치(11.2%) 등

○ 품목수 기준 58.7%, 대미 수출액 기준 82%를 즉시철폐

※ 5년 내 철폐 : 품목수 기준 81.4%, 수출액 기준 84.2%

양허유형	품목수	비중 (%)	수입액 (백만불)	비중 (%)	주요 품목
10년 철폐, 수입쿼타	26	1.4%	0.32	0.1%	낙농품 (300MT)
15	65	3.6%	0.03	0.0%	멥쌀, 쇠고기, 치즈
10	154	8.5%	4.33	1.9%	설탕, 면화
7	91	5.0%	30.92	13.8%	담배, 대두유(조유), 채소(조제저장)
6	1	0.1%	0.00	0.0%	호두(탈각)
5	401	22.1%	4.56	2.0%	아이스크림, 버섯
2	10	0.6%	0.20	0.1%	자두(조제저장), 단백질계 물질
즉시철폐	1,065	58.7%	184.33	82.0%	라면, 배, 조제식료품, 음료, 주류, 간장, 된장, 고추장, 삼계탕, 김치, 포도주스, 오렌지주스(냉동)
합계	1,813	100%	224.70	100%	

3 농업분야 협정문

< 농업분야 협정문 개요 >

- ◇ 농업분야 협정문은 총 5개 조문으로 구성
 - 협정문 적용 대상 및 범위, 수입쿼타 관리, 농산물 세이프가드, 농업위원회, 정의규정
- ◇ 협정문 내용 중 핵심은 수입쿼타 관리, 농산물 세이프가드, 농업위원회 등 세가지

- 한미 FTA에서 신설된 수입쿼타 관리에 대한 상세 규범 마련
 - 기존 WTO 협정에 의해 운영하고 있는 수입쿼타와는 대상 품목도 다르며, WTO 협정상 수입쿼타 관리에도 영향을 주지 않음
 - 수입쿼타 적용 세번, 쿼타물량, 관리방식 등을 양허안의 부록에 해당 품목별로 기재하기로 합의
 - 당초 미측은 선착순 방식만을 적용할 것을 주장했으나, 최종 선착순, 수입권 공매, 과거 실적기준 배분 방식 도입에 합의
 - 수입권 공매 및 과거 실적기준 배분의 경우 쿼타 물량이 모두 수입되지 않을 경우 양국이 협의할 수 있도록 함
 - 한미 FTA에서 설정된 수입쿼타에 국영무역 방식은 채택하지 않음
 - 지금까지 체결한 FTA에서의 수입쿼타도 대부분 수입권 공매 방식을 채택, 향후에도 국영무역 방식 도입은 최대한 자제할 계획
 - * 국영무역 방식으로는 실수요자가 원하는 품목을 구입하는데 한계
 - WTO 협정상 국영무역 관리품목도 점차 수입권 공매, 실수요자 배정 등 시장지향적 방식으로 전환해가고 있음
 - * 인삼, 감귤, 천연꿀 등은 기존 국영무역품목을 수입권 공매 등

으로 전환하였고, 식용 콩, 양파, 고추, 생강, 땅콩, 참깨 등은 국영무역과 수입권 공매 및 실수요자 배정 등 여타 방식 혼합 적용 (현재 순수 국영무역품목은 쌀, 마늘, 잣 뿐임)

○ 수입쿼타 관리규범은 **WTO 협정의 관리규범과 유사한 형태**

- 수입국의 법적, 행정적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누구나 수입권을 배정받을 자격이 있음
- 쿼타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징수 가능
- 생산자단체에게 물량을 배정하거나, 국내산 구매를 조건으로 하거나, 가공업자에 한정하여 쿼타를 배분할 수는 없음
- 수입업자의 요구에 부합하고 상업적으로 거래되는 단위를 고려하여 물량을 배분하되, 규격, 등급, 최종용도, 포장크기 등을 조건으로 해서는 안됨

□ **농산물 세이프가드는 수입물량이 발동기준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도입**

- 협정문의 부속서에 각 품목의 연도별 발동기준물량 및 이를 초과할 경우 부과할 수 있는 추가관세율을 명시
 - 기준물량은 과거 최대 수입물량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서 설정
 - 추가관세율은 여타 WTO 회원국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행기간 경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하
- 발동 후 60일 이내에 상대국에 서면으로 발동사실을 통보
- 무관세 쿼타 물량에 대해서는 발동할 수 없으며, 동일 품목에 대해 여타 세이프가드 조치와 중복 적용 불가
 - 한미 양국간에는 WTO 농업협정상의 특별긴급관세 적용 배제
- 사과,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등 주요 품목은 관세가 철폐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유지
 - * 미국은 기존 FTA에서 관세철폐 후 세이프가드를 인정 한 사례가 거의 없음

- 농업위원회를 설치하여 농업분야 협정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협의
- 협정 발효 후 90일 이내에 구성
- 원칙적으로 매년 1회 위원회를 개최하고, 양국이 번갈아가며 회의를 주관하며, 의사결정은 합의 방식

4

기타 관련 분과

가 위생 및 검역분과(SPS)

- ☐ 총 7차례(고위급 협상 포함)의 협상을 가졌고, 양측 모두 농림, 식약청, 통상부서 등 다수 부처의 전문가가 참여
 - 우리측은 농림부, 미측은 USTR이 분과장을 맡음
 - * 제5차('06.12) 및 제6차('07.1) 협상은 의제에 합의를 이루지 못해 미개최

- ☐ 양국간 위생·검역(SPS)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서 FTA에서 별도 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WTO 협정을 준수**한다고 명시
 - 양국간 관련 협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 **SPS 정례위원회**를 설치하되, 통상압력을 주지 않도록 하는 **명문규정*** 마련
 - * 양국간 검역문제는 과학적 위험평가와 전문기관간 기술협의를 통해 다루고, 동 위험평가는 양국의 해당 전문기관이 수행하도록 함
 - 당초 미측이 요구한 **투명성 조항**은 우리 제도에 대한 상세 설명 후 삭제기로 합의

- ☐ 양자간 검역현안은 **FTA 협상과 분리**한다는 원칙에 합의했고, 별도의 분야별 기술협의를 수차례 개최
 - 동물검역은 육류작업장 승인제도 및 지역화 인정 문제를, 바이오텍은 LMO법 시행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
 - * 동물검역(3회, 농림부), 식물검역(1회, 농림부), 바이오텍(3회, 산자부), 유기가공식품(1회, 식약청) 등

- 한미 FTA 위생·검역분야 합의 사항이 **현행 검역제도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
- 기본적으로 양국간 FTA 체제 하에서도 **WTO SPS 협정을 준용** 하고, 분쟁발생 시에도 WTO 분쟁해결절차를 활용
 - 다만, WTO협정 및 국제기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위생·검역 제도를 보다 정밀하게 보완·운영해 나갈 필요
 - **SPS 정례위원회**를 통해 양국의 규제 당국간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 SPS 기술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 검역조치에 관한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예방하는 효과 도모

◇ **LMO와 관련하여 산자부는 FTA와는 별개로 기술협의 진행**

- 한미간 기술협약에서는 국내 규정을 확인, 양국간 불필요한 교역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선언적 내용을 합의
 - i) 한국은 수입되는 LMO 용도에 적합한 환경위해성 평가 실시
 - ii) 한국은 특별사유시(과학적 위험 존재시) 교배된 LMO의 추가 위해성 평가 실시
 - * 교배된 LMO : 기 승인된 LMO간 교배에 의하여 생산된 LMO
 - iii) 한국내 LMO 표시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확보
 - iv) 양국간 교역상 예상 장애 이슈는 양자간 의사소통 채널 활용, 논의
 - v) 양국은 불필요한 교역상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한국이 향후 바이오 의정서 가입시 이러한 노력 지속
 - vi) 미국이 자국 LMO 규정 개정시 한국에 관련 정보 제공

나 원산지 분과

- ☐ 원산지 협상은 FTA 체결 당사국 간에 적용되는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격 기준을 마련하는 협상
 - 체결 당사국에서 수출되어도 FTA 원산지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특혜관세 대신 WTO 회원국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세율 적용
 - * 위생·검역(SPS)과 관련해서는 동 원산지 판정기준을 사용하지 않음

- ☐ 신선 농산물은 **완전생산기준**에 근접한 원산지 기준 적용
 - 화훼, 채소, 과일, 곡물류는 당사국에서 재배하고 수확한 농산물에 대해서만 특혜관세 원산지 인정
 - * 캐나다, 멕시코 등 제3국에서 재배하거나 수확한 작물을 미국에 수입한 후 우리나라에 재수출하면 원산지 불인정
 - 닭고기는 **완전생산기준**, 나머지 육류는 제3국산 생축을 수입해 도축한 경우도 원산지를 인정(**도축국 기준**)
 - 다만, FTA 원산지기준은 수입가능성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협정문에 명시함으로써 위생·검역 조건을 우회한 수입 우려 해소
 - * 쇠고기는 도축국 기준을 적용해도 위생·검역조건에 의해 캐나다산 생우를 미국에서 도축한 경우 수입이 금지, 멕시코산 생우는 미국 내에서 100일 이상 사육 후 도축해야 수입이 가능하므로 실질적으로 사육국 기준 적용과 동일

- ☐ 가공 농산물 중 민감한 품목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적용하기로 함
 - 제3국에서 수입한 쌀을 제분한 쌀가루, 또는 쌀가루가 들어간 가공식품, 찌쌀은 원산지 불인정

- 제3국에서 수입한 **인삼**을 가공한 제품은 원산지 불인정
- 제3국에서 수입한 **과실, 견과류, 채소**를 단순 가공하여 냉동하거나 염수 등에 저장·처리한 경우 원산지 불인정

☐ **라면, 소주, 청주** 등 대미 수출이 많거나 우리나라산 선호가 높은 품목은 **업계 요구를 반영**하여 제3국산 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원산지 기준 마련

☐ “**농산물품질관리법**”상 **원산지 표시 제도**를 고려하여, 여러 나라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수출창고에서 섞일 경우 수입국은 수입자에게 혼합비율을 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서비스 분과

- ☐ 서비스는 ‘개방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보호 필요성이 높은 민감한 분야만 유보하고, 모호하거나 포괄적 유보 지양
- 유보안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업은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채택

- ☐ 농업분야 서비스는 기존 FTA의 유보 내용을 기초로 하되, 법령상 농림서비스를 전수 조사·검토하여 유보안 작성
- 유보안은 **현재유보**(부속서Ⅰ)와 **미래유보**(부속서Ⅱ)로 구분 작성
 - **현재유보**는 현재 외국인에 대한 차별·제한이 있는 분야로서 한미 FTA에서도 개방을 유보하는 분야
 - * 벼·보리재배업·육우사육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금지 및 지분제한, 수의서비스, 유통서비스(육류도매, 가축시장, 공영도매시장, 공판장)
 - **미래유보**는 현재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제한이 없으나 향후 규

제 도입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미리 밝히는 것임

- * 농지, 쌀·인삼·홍삼 유통서비스, 농촌관광, 인증·검사·등급
판정업, 쌀저장업, 농림업부수서비스(쌀·보리 도정업, RPC 포함)

라	금융서비스 분과
----------	-----------------

- ☐ 서민·농민·중소기업 지원 등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책 금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농협, 수협)은 협정의 예외로 인정
- 이들 국책금융기관이 공적인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정부가 제공하는 지급보증, 손실보전 등은 유지 가능

<붙임 1> 농산물 세이프가드 품목 개요

	실품목	초기연도 발동기준(톤)	최종연도 발동기준(톤)	적용기간(년)
1	쇠고기	270,000	354,000	15
2	돼지고기	8,250	13,938	10
3	마늘	1,148	2,297	18
4	양파	2,904	5,808	18
5	고추	827	1,655	18
6	녹두, 팥	238	714	15
7	고구마	212	530	10
8	서류	30	30	10
9	사과	9,000	20,429	23(후지) 10(기타)
10	녹차	8.3	16.6	18
11	생강	573	1,147	18
12	맥주맥/맥아	9,000	11,875	15
13	보리	2,500	3,299	15
14	옥수수(팝콘용)	5,112	11,246	7
15	옥수수(가공용)	187,547	412,603	7
16	메밀/기타곡물	250	750	15
17	기타가공곡물	128	299.10	15
18	감자 분/플레이크	5,000	6,524	10
19	옥수수전분	10,000	15,126	15
20	감자전분	239	717	15
21	매니옥전분	433	1,299	15
22	고구마전분	202	606	15
23	기타전분	53	159	15
24	낙화생	140	281	18
25	참깨	3,561	7,121	18
26	참기름	30	61	18
27	인삼	62	103	20* 18*
28	설탕	833,071	1,460,794	20
29	발효주정	236	708	15
30	변성전분	14,000	19,379	12

* 수삼 및 홍삼·백삼 등 뿌리삼류(본삼, 미삼, 잡삼) : 20년

* 홍삼분, 홍삼엑스, 홍삼타블렛 등 홍삼가공품 : 18년

<붙임 1-1> 농산물 셰이프가드 품목 중 무관세쿼타가 제공되는 품목

	품목명	양허유형	최초연도 발동기준 물량(톤)	무관세쿼타		
				제공 기간	최초연도 제공물량(톤)	연간 증량
1	녹두/ 팔	15년 철폐	238	14년	119	*
2	고구마	10년 철폐	212	9년	106	*
3	기타서류	10년 철폐	30	9년	30	고정
4	보리	15년 철폐	2,500	14년	2,500	복리 2%
5	맥주맥/맥아	15년 철폐	9,000	14년	9,000	복리 2%
6	옥수수(가공용)	7년 철폐	187,547	6년	93,774	*
7	옥수수(팝콘용)	7년 철폐	5,112	6년	2,556	*
8	메밀/기타곡물	15년 철폐	250	14년	125	*
9	기타가공곡물	15년 철폐	128	14년	64	*
10	감자분/플레이크	10년 철폐	5,000	9년	5,000	복리 3%
11	옥수수전분	15년 철폐	10,000	14년	10,000	복리 3%
12	고구마전분	15년 철폐	202	14년	0.5	0.5톤
13	감자전분	15년 철폐	239	14년	0.5	0.5톤
14	기타전분	15년 철폐	53	14년	0.5	0.5톤
15	매니옥전분	15년 철폐	433	14년	0.5	0.5톤
16	발효주정	15년 철폐	236	14년	118	*
17	변성전분	12년 철폐	14,000	11년	14,000	복리 3%
18	인삼	18년 철폐	62	17년	5.7	복리 3%
실품목 18개						

주) 7개 품목* 무관세쿼타 증량 원칙

* 녹두/팔, 고구마, 옥수수(가공용), 옥수수(팝콘용), 메밀/기타곡물,
기타가공곡물, 발효주정

- 무관세쿼타 물량은 이행 1년차는 농산물 셰이프가드 발동기준물량의 50%,
2년차는 62.5%, 3년차는 75%, 4년차는 87.5%, 5년차 이후는 100%로 책정
- 셰이프가드 발동기준물량에서 무관세쿼타를 제한 물량에는 아래 관세율을
적용
 - 이행 1년차는 55%, 2년차는 40%, 3년차는 25%, 4년차는 15%, 5년차는
0%

<붙임 2> 수입쿼타 품목 현황

	실품목	양허유형	수입쿼타(TRQ) 물량		
			제공기간	최초연도 제공물량(톤)	연간 증량
1	탈지분유/전지분유/연유	현행관세유지	제한없음	5,000	복리 3%
2	유장분말(식용) *사료용유장과 식용유장분리	10년 철폐	9년	3,000	복리 3%
3	치즈류	15년 철폐	14년	7,000	복리 3%
	체다치즈	10년 철폐	9년		
4	조제분유(유아용)	10년 철폐	9년	700	복리 3%
5	버터	10년 철폐	9년	200	복리 3%
6	천연꿀	현행관세유지	제한없음	200	복리 3%
7	보조사료(동물사료)	12년 철폐	11년	5,500	복리 3%
8	사료용근채류	15년 철폐	14년	200,000	고정
9	식용감자(신선)	현행관세유지	제한없음	3,000	복리 3%
10	식용대두(가공용)	현행관세유지	제한없음	1년차: 10,000 2년차: 20,000 3년차: 25,000	4년차부 터 복리 3%
11	오렌지	현행관세유지	제한없음	2,500	복리 3%
실품목 11개 (양허표에는 36개 세번)					

주) 수입쿼타 물량에 대해서는 무관세 적용

<붙임 3> 주요 품목별 한미 FTA 협상 결과

< 식량작물 >

품목명	협상 결과
쌀 (관세화 유예)	○ 쌀 및 쌀관련 16개 세번은 협상에서 제외 * 제3장(농업) 제1조의 각주와 제2장의 부속서 2-나(양허표)에 대한 한국측 일반주해 문단 3의 (타)를 통해 쌀 관련 16개 세번은 관세에 관한 어떠한 추가 의무 없이 쌀 관세화 유예에 관한 협상(2005.4.13)의 결과로 작성된 WTO 문서 WT/Let/492 (양허표 LX-대한민국의 수정 및 정정의 인증본) 및 그 수정본에 있는 결과를 이행한다고 명시
대두	○ 식용대두의 현행관세(487%) 유지를 조건으로, 장유박용 세번 분리 및 식용대두 무관세쿼타 제공 - 착유 및 대두박용('06년 할당물량 1,414천톤, 관세 1%) : 즉시철폐 - 장유박용('06년 TRQ 수입량 25천톤, 5%) : 즉시철폐 - 식용대두('06년 TRQ 수입량 221천톤, 5%) : 현행관세 유지, 무관세쿼타 1년차 10천톤, 2년차 20천톤, 3년차 25천톤(매년 복리 3% 증량)
감자 · 감자 분	○ 식용감자는 현행관세(304%) 유지를 조건으로 무관세쿼타 제공, 칩용감자는 별도로 세번을 분리하여 계절관세를 적용 - 식용 : 현행관세 유지, 무관세쿼타 3천톤(매년 복리 3% 증량) - 칩용 : 계절관세(12~4월: 즉시 / 5~11월: 7년 유예 8년 철폐) ○ 감자분(304%): 10년 철폐, 무관세쿼타 9년 제공, 5천톤(매년 복리 3% 증량) 농산물 세이프가드(ASG) 적용
보리	○ 15년 철폐, ASG 적용, 무관세쿼타 제공 - 겉보리(324%) + 쌀보리(299.7%) : 14년 제공, 2,500톤(매년 복리 2% 증량) - 맥아(269%) + 맥주맥(513%) : 14년 제공, 9,000톤(매년 복리 2% 증량)
옥수수	○ 7년 철폐, ASG 적용, 무관세쿼타 제공 - 옥수수기타(328%) : 6년 제공, 93,774톤(1년차)~393,849톤(6년차) - 옥수수팝콘(630%) : 6년 제공, 2,556톤(1년차)~10,735톤(6년차)
전분	○ 15년 또는 12년 철폐, ASG 적용, 무관세쿼타 제공 - 옥수수전분(226%) : 14년 제공, 10,000톤(매년 복리 3% 증량) - 변성전분(385.7%) : 11년 제공, 14,000톤(매년 복리 3% 증량) - 감자전분(455%), 매니옥전분(455%), 고구마전분(242.1%), 기타전분(800.3%) : 14년 제공, 각 품목 0.5톤씩(매년 각 품목 0.5톤씩 증량)
기타	○ 15년 또는 10년 철폐, ASG 적용, 무관세쿼타 각 1천톤 미만 제공 - 팥(420.8%), 녹두(607.5%), 고구마(385%), 기타서류(385%), 메밀(256.1%)/기타곡물(800.3%), 기타가공곡물(800.3%), 발효주정(270%)

< 육류>

품목명	협상 결과
쇠고기	○ 민감한 6개 세번(40%) : 15년 철폐, 동 기간 중 ASG 적용 * 도체와 이분도체(냉장 및 냉동), 부분육(냉장 및 냉동) - ASG 발동물량 : 270천톤(1년차) → 354천톤(15년차, 매년 6천톤 증량) - ASG 발동세율 : (1~5년차까지) 실행세율을 적용 → (6~10년차) 실행세율의 75% → (11~15년차) 실행세율의 60% ○ 육우(40%)와 식용설육(족·꼬리 등)(18%), 쇠고기 가공품(72%) 등 : 15년 철폐
돼지고기	○ 민감한 2개 세번(22.5%) : 10년 철폐, 동 기간 중 ASG 적용 * 냉장 삼겹살과 기타(갈비·목살 등) - ASG 발동물량 : 8,250톤(1년차) → 13,938톤(10년차, 6% 증량) - ASG 발동세율 : (1~5년차까지) 실행세율 적용, (6~10년차) 실행세율의 70%에서 50%까지 인하(매년 5%씩 감축) ○ 냉장육(도체와 이분도체, 전·후지)(22.5%), 냉동육(25%), 식용설육(18~30%), 돼지고기 가공품(27~30%) : 2014.1.1 철폐(7년 철폐와 유사) ○ 소시지(18%) : 5년 철폐
닭고기	○ 통닭(18~20%), 냉동(가슴살, 날개)(20%) : 12년 철폐 ○ 냉장육(18%), 냉동(다리, 기타 절단육)(20%), 닭고기 가공품(30%) : 10년 철폐
계란	○ 계란(41.6/TRQ 30%), 전란액(27%) : 15년 철폐 ○ 난황(27%) : 12년 철폐 ○ 종란(27%) : 10년 철폐 ○ 난백(8%) : 5년 철폐
기타 육류	○ 오리고기(18~22.5%) : 냉장육 10년 철폐, 냉동육 12년 철폐 ○ 산양·면양고기(22.5%) : 10년 철폐 ○ 칠면조고기(18%) : 7년 철폐 ○ 녹용·녹각(20%) : 15년 철폐

< 낙농품, 꿀, 사료 >

품목명	협상 결과
분유 연유 유당	○ 탈지분유·전지분유(176/TRQ 20~40%)·연유(89/TRQ 40%) : 현행관세 - 무관세쿼타 제공 : 5천톤(매년 복리 3% 증량) ○ 혼합분유(36%) : 10년 철폐 ○ 조제분유(36~40%) : 10년 철폐 - 무관세쿼타 9년 제공 : 700톤(매년 복리 3% 증량) ○ 유당(49.5/TRQ 20%) : 5년 철폐
치즈	○ 체다치즈(36%) : 10년 철폐 ○ 체다 이외의 치즈(36%) : 15년 철폐 ○ 치즈 무관세쿼타 14년 제공: 7천톤(매년 복리 3% 증량)
밀크와 크림 (36%)	○ 밀크와 크림(지방함량 6% 이하) : 15년 철폐 ○ 크림 기타(지방함량 6% 초과) : 12년 철폐 ○ 냉동 크림(지방함량 6% 초과) : 10년 철폐
버터 (89%, TRQ 40%)	○ 10년 철폐 - 무관세쿼타 9년 제공 : 200톤(매년 복리 3% 증량)
유장 (49.5%, TRQ 20%)	○ 식용 : 20%부터 시작해 10년간 철폐 - 무관세쿼타 9년 제공: 3천톤(매년 복리 3% 증량) ○ 사료용 : 즉시 철폐
꿀	○ 천연꿀(243%/TRQ 20%) : 현행관세, 무관세쿼타 200톤(매년 복리3% 증량) ○ 인조꿀(243%/TRQ 20%), 로얄제리(8%), 벌꿀조제품(8%) : 10년 철폐
사료 품목	○ 사료용 근채류(100.5%/할당 2%) : 15년 철폐, - 무관세쿼타 14년 제공: 20만톤(증량 없음) ○ 보조사료(50.6/TRQ5%) : 12년 철폐 - 무관세쿼타 11년 제공 : 5,500톤(매년 복리 3% 증량) ○ 사료용 옥수수(할당 0%), 대두(채유 및 박용)(할당 1%) : 즉시 철폐

< 과일 · 과채류 >

품목명	협상 결과
오렌지 (50%)	○ 성출하기(9.2월): 현행관세(50%) 유지, 무관세쿼타: 2,500톤(매년 복리 3% 증량) ○ 비출하기(3-8월): 관세 30%에서 시작하여 7년 철폐 ○ 오렌지쥬스(54%): 냉동은 즉시철폐, 냉장은 5년 철폐
감귤류(144%) 키위(45%)	○ 15년 철폐 ○ 감귤쥬스(54%): 10년 철폐, 감귤(조제저장처리)(45%): 10년 철폐
사과(45%)	○ 후지 계통 품종 : 20년 철폐, ASG 23년 적용 ○ 기타 품종 : 10년 철폐, ASG 10년 적용 ○ 사과쥬스(45%): 브릭스 20 이내 10년 철폐, 브릭스 20 초과 7년 철폐 ○ 사과(조제저장처리)(45%) : 7년 철폐
배(45%)	○ 동양배 품종 : 20년 철폐, 기타 품종 : 10년 철폐 ○ 배(조제저장처리)(45%): 10년 철폐
포도(45%)	○ 성출하기(5월 - 10.15) : 17년 철폐 ○ 비출하기(10.16 - 4월) : 관세 24%에서 시작하여 5년 철폐 ○ 포도주(15%): 즉시 철폐, 포도쥬스(45%) : 즉시 철폐 ○ 포도(조제저장처리)(45%) : 7년 철폐
복숭아, 단감(45%) 감(50%)	○ 복숭아, 단감, 감: 10년 철폐 ○ 복숭아(설탕첨가/밀폐용기의 것)(50%): 10년 철폐, 복숭아(기타 조제저장처리)(45%): 5년 철폐, 복숭아쥬스(50%): 10년 철폐
딸기 (45%)	○ 신선초분류 딸기 : 9년 철폐, 나무딸기(신선) : 12년 철폐 ○ 냉동딸기(초분류 및 나무딸기)(30%) : 5년 철폐 ○ 초분류딸기(일시저장처리)(30%), 딸기쥬스(50%) : 10년 철폐 ○ 초분류딸기(조제저장처리)(45%) : 15년 철폐
토마토 (45%)	○ 신선 및 냉장 : 7년 철폐 ○ 조제저장처리(30%), 토마토 쥬스(30%), 케첩(8%), 소스(45%) : 5년 철폐 ○ 토마토 페이스트(5%) : 즉시 철폐
오이(27%)	○ 즉시 철폐 (조제저장처리(30%)는 5년, 일시저장처리(30%)는 10년 철폐)
가지(27%)	○ 즉시 철폐
호박(27%)	○ 즉시 철폐 (건조호박(30%)은 10년 철폐)
수박(45%)	○ 12년 철폐
멜론(참외)(45%)	○ 12년 철폐 (껍질(30%)은 즉시 철폐)

< 양념채소, 인삼, 특작 >

품목명	협상 결과
고추 (270%)	○ 핵심 5개 세번 : 15년 철폐, ASG 18년간 적용 - 신선고추, 건조고추, 고춧가루 등 ○ 냉동고추 : 15년 철폐
마늘 (360%)	○ 핵심 4개 세번 : 15년 철폐, ASG 18년간 적용 - 통마늘 · 깎마늘 · 일시저장 · 건조마늘 ○ 냉동마늘 : 15년 철폐 ○ 초산조제 · 조제저장처리 마늘 : 10년 철폐
양파 (135%)	○ 신선 및 건조 양파 : 15년 철폐, ASG 18년간 적용 ○ 냉동양파 : 12년 철폐 ○ 초산조제 · 조제저장처리 양파 : 10년 철폐
생강 (377.3%)	○ 신선 생강 : 15년 철폐, ASG 18년간 적용 ○ 설탕저장처리 생강 : 5년 철폐
파 (27%)	○ 건조 파 : 7년 철폐 ○ 조제저장처리 쪽파 : 5년 철폐 ○ 쪽파 · 기타파속채소 : 즉시 철폐
인삼 (222.8 ~ 754.3%)	○ 핵심 7개 품목 : 18년 철폐 및 ASG 20년간 적용 - 수삼 및 홍삼 · 백삼 등 뿌리삼류(본삼, 미삼, 잡삼) - 무관세쿼타 제공 : 5.7톤(매년 복리 3% 증량) ○ 홍삼가공품 9개 품목 : 15년 철폐 및 ASG 18년간 적용 - 홍삼분, 홍삼엑스, 홍삼타블렌 등 ○ 백삼분 2품목 : 15년 철폐 ○ 그 외 인삼품목 : 10년 철폐 ○ 의약품 3품목 : 즉시철폐
참깨, 참기름 땅콩	○ 15년 철폐, ASG 18년 적용 * 참깨 · 참기름(630%/WTO TRQ 40%), * 땅콩(230.5%/WTO TRQ 24%), 땅콩조제품(63.9%/WTO TRQ 40%)

< 엽근채류 >

품목명	협상 결과
당근(30%)	○ 5년 철폐 (건조·일시저장처리 10년)
무(30%)	○ 10년 철폐 (건조는 7년)
배추(27%)	○ 기타/신선/냉장 즉시, 신선/냉장 5년 폐지
채소류 혼합물, 순무, 양배추	○ 즉시 철폐 (건조 양배추는 10년)
기타	○ 연뿌리·기타식물(설탕저장처리) 5년, 고구마줄기 7년, 토란줄기 10년 철폐
기타채소	○ 냉동·일시저장처리 : 즉시철폐 ○ 조제저장처리·설탕저장처리 : 5년 철폐 ○ 건조는 7년, 신선/냉장은 10년 철폐
채소 혼합류스, 기타채소 혼합물, 균질화한 채소 (유아용퓨레콘 등)	○ 5년 철폐

<기타 가공식품>

품목명	협상 결과
설탕(50%)	○ 15년차까지 30%로 감축하고, 16년차에 철폐 - ASG 20년간 적용
대두유(5.4%), 옥수수유(8%)	○ 대두유 : 조유는 10년, 정제유는 5년 철폐 ○ 옥수수유 : 조유는 5년, 기타는 6년 철폐
혼합조미료 (45%)	○ 성분 중 고추·마늘·양파의 비중이 각각 20% 이상 또는 이를 합쳐서 40% 이상일 때 : 15년 철폐 ○ 그 이외 : 5년 철폐
장류	○ 된장, 춘장(8%) : 10년 철폐 ○ 간장(8%), 고추장(45%), 기타장류(쌈장,청국장) : 5년 철폐
과자류, 빵류, 기타식품류	○ 초코렛류, 파이&케이크 등 : 5년 철폐 ○ 식빵, 건빵 등 빵류 : 10년 철폐 ○ 커피, 라면, 소주, 포도주 등 : 즉시철폐

토론 내용

토론회 진행 순서

- 개회사 : 최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 주제발표 I : 김정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제목 : 농업구조 변화의 전망과 정책과제
- 주제발표 II : 박현출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장)
 - 제목 :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국내보완대책(안)
- 지정토론
 - 좌장 : 최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 지정토론자
 - 김동환 (대한양돈협회 회장)
 - 김종기 (중앙대학교 교수)
 - 남호경 (전국한우협회 회장)
 - 박종수 (충남대학교 교수)
 - 양민웅 (제주도 감귤 농업인, 제주도 FTA 대책위원회 위원)
 - 윤원근 (협성대학교 교수)
 - 윤익노 (전국과수협회 회장)
 -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
 - 임정빈 (서울대학교 교수)
- 방청석 토론
- 종합 정리

개회사(최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농촌경제연구원의 최정섭 원장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오후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농특위 황민영 위원장님께 특별한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창 농사가 바쁘고 계획을 많이 세워야 하는 농번기에 불구하고 토론회에 많이 참석해주신 농업인, 관련단체,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농업이 UR 이후 또 한 차례의 커다란 시련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번 타결된 한미 FTA로 인해 농업은 대표적인 피해 산업으로서 우리 농업계의 걱정은 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우리 농업의 어려움은 단지 FTA로 인한 시장개방 피해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나빠지는 여건에서 이를 헤쳐나갈 농업 내부의 역량마저 취약하다는데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농업인·학계 또 관련종사자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회는 의미가 크고 일반 사회의 관심도 매우 크다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토론회는 “한·미FTA 농업부문 보완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농업인·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자리입니다. 농림부는 지난 4월 3일에 1차적으로 국내대책의 윤곽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좀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진 안을 농림부가 발표하고, 또 오늘 토론된 결과를 반영해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먼저 우리 연구원의 김정호 박사와 농림부 박현출 국장이 각각 주제발표를 하고, 이어 지정토론과 방청객 토론을 듣고, 그 다음에 발표자들의 말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농업은 고령화와 후계자 부족으로 농업 자체의 지속 가능성이 매우 의심되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시장개방 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농업구조조정은 선진농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도전의 기회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오늘 발표된 제1주제에서는 우리 농업구조 변화의 장기 추세 속에서 시장개방 진전에 따라 변화될 미래 농업의 모습을 전망하고, 우리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구조정책의 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농림부의 보완대책입니다. 시장개방으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농업소득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농업구조 개선과 품목별 경쟁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농림부의 보완대책은 다음 4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농업구조 개선과 농가소득 향상, 두번째로는 품목별 경쟁력 향상 지원대책, 세번째로 개방 진전에 따른 단기적 피해보전 장치 확충을 해야 된다는 측면이고, 마지막으로 교육·복지 개선 등 농촌생활 여건 개선대책이 되겠습니다. 농림부는 이번 대책과 아울러 “FTA이행지원 특별법령”을 개정하여 대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토론을 해 주실 지정토론자는 여덟 분을 모셨습니다. 과수연합회 윤익로 회장님, 전국한우협회 남호경 회장님, 대한양돈협회 김동환 회장님,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님, 제주에서 감귤농사를 지으시면서 FTA대책위원을 맡고 계신 양민웅 선생님, 그리고 학계에서는 충남대에서 박종수 교수님, 중앙대에서 김종기 교수님, 협성대에서 윤원근 교수님, 서울대에서 임정빈 교수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정토론을 마친 후 방청석의 자유토론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토론회가 우리 농업 농촌의 미래 및 FTA 대책에 대하여 참석자 모두가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우리 농업의 미래를 향한 건설적인 방안이 도출되는 중요한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유익한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자(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 강혜정)

지금부터 주제발표를 끝이어 시작하겠습니다. 제1주제는 농촌경제연구원 김정호 박사님께서 “농업구조 변화의 전망과 정책 과제”에 대해서 주제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김정호(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방금 소개받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정호입니다. 앞으로 한 20여분 동안 시장개방에 따라서 한국 농업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 갈 수 있을 것인가, 농업구조 변화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이에 대한 농정과제는 어떤 것들을 생각해볼 수 있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첫째, 한국 농업의 구조 변화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래서 대체로 1960년대 후반 이후 현재까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둘째, UR 이후 추세와 한미 FTA를 반영한 시장개방에 따라 농업구조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모습을 나타낼 것인지 보고, 마지막으로 농정 과제를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내용 생략)

사회자(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 강혜정)

곧 이어 제2주제 “한미FTA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국내보완대책안”에 대해서 농림부 구조조정정책국 박현출 국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출(농림부 구조조정정책국장)

감사합니다.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장의 업무를 맡고 있는 박현출입니

다. 세상이 두 쪽이 나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떠한 난관이 오더라도 거기에서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 농업계의 수많은 인재들과 많은 분들의 의견과 지혜를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런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국내보완대책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실은 이런 내용 없이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부분을 그야말로 마음을 터놓고 모두 논의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무 논의 자체가 특정주제로 모아지지 못하고 중구난방으로 흐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늘 대책안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에 국한하지 않고 우리 농업과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이라면 어떠한 것이어도 앞으로 더 열심히 논의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발표내용 생략)

좌장(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정섭)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의 좌장을 맡게 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정섭입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해주실 토론자들을 다시 한 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임정빈 서울대교수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님 모셨습니다. 그 왼쪽으로 윤익로 한국과수농업연합회회장님 되십니다. 그 옆으로 윤원근 협성대 교수님 소개 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멀리 제주에서 오신 양민웅 선생님, 제주도에서 감귤농사를 지으시면서 FTA대책위원회 위원을 맡고 계십니다. 박종수 충남대 교수님 소개드립니다. 왼쪽으로 남호경 전국한우협회 회장님 소개 드리겠습니다. 그 옆으로 중앙대 김종기 교수님 소개 드리겠습니다. 대한양돈협회 김동환 회장님이십니다. 이상으로 아홉 분 지정 토론자들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방청석에 전국 단위의 품목 단체를 이끌고 계시는 회장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추후 방청석에 기회를 드릴 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이 단상에는 지정토론자로서 전국 단위의 품목을 대표하시는 바쁘신 회장님들과 대학교에서 각 품목을 전공하시는 교수님들 네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홉 분들의 토론을 차례차례 듣고, 그 다음에 방청석에서 말씀하실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표자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주시고, 마지막 마무리를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정토론자들께서는 10분 내외로 토론을 정리해주시고, 그 다음에 방청석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마지막 발표하신 농림부 박현출 농정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시안이 어떻게 보면 사실 별로 새로운 내용이 없을 수도 있고, 정말 시안 중에 시안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론이 마지막이 아니며, 토론의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여 또 다른 지역토론회 등 다른 차원의 토론회를 통해서 안을 만들어 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토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축산물 중에서 한우, 낙농육우, 양돈의 품목대표들이 나오셨고, 과수에서는 감귤농사를 직접 지으시고 FTA 대책위원을 맡고 계시는 제주도의 양선생님께서 나오셨고, 과수연합회 회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우선 축산 쪽에서 먼저 말씀을 들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님부터 지정토론의 물꼬를 터주십시오.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승호(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낙농육우협회장 이승호입니다. 금일 토론회가 토론회 주제가 FTA 보완대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이지만, 저는 우선 한미FTA로 인한 피해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말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농촌경제연구원 등 11개 국책연구원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한미FTA 경제적효과 분석자료를 보면 유제품의 경우 5년차에 약 416억원, 분유를 제외한 모든 유제품이 철폐되는

15년차에도 594억원의 생산액 감소가 발생할 것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낙농부문 무관세 철폐 물량과 농가 쿼터손실 부문만 단순 계산하더라도 피해액은 약 1천억원이 넘는데도 국책기관이 발표한 내용과는 너무 큰 차이가 발생했고, 이 같은 문제는 한우, 양돈 등 다른 축종에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국책연구기관이 발표한 내용 자체의 신뢰성에 의문이 가고, 피해 축소에만 급급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한미FTA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파악이 되어야 그에 걸맞은 보완대책이 마련이 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리며, 피해가 적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나올 리가 만무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낙농제도 개편에 대한 부분을 줄곧 요구해 왔습니다만, 사실 한미FTA 타결 이전에도 우리 낙농산업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실패로 근간을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위기에 대해서 구성원 모두가 현재의 문제를 인식하고 중장기 근본대책 마련을 위해 논의중에 있습니다만, 정부가 농가와 유업체의 합의를 바탕으로 제도 개편을 하겠다는 것은 제도 개편을 안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합의를 통해서 낙농제도 개편을 실시한 나라는 없습니다. 우유수급 안정을 위한 전국단위 제도개편을 하겠다고 농림부가 협회와 협의한지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늘 정부는 생산자단체에 대안을 제시하라는 제안을 했고, 낙농육우협회는 생산자단체로서 유일하게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협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FTA로 인한 낙농산업 최우선 과제는 전국단위 제도개편이며, 이를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함께 실질적인 참여방안 제시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FTA 보완대책의 부재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한미 FTA보완대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라고 하지만, 저는 낙농대책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대책은 없다고 봅니다. 정부가 발표한 조사료 확충사업, 시설자금지원 등과 같은 내용은 기존사업에 대한 부가적인 지원일 뿐이지 낙농육우산업의 기반 존립을 위한 대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낙농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학교 우유급식 제도화와 우유표기 개선 및 우유소비 확대, 그리고 낙농유제품 관세체계 개선으로 정확한 용도를 파악해서 향후 FTA협상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이 같은 내용은 농업농촌종합대책에 포함된 사항으로 정부가 나서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유에 대한 고율관세만 유지했지 TRQ물량을 과도하게 내주었다고 지적을 하며, 국내 우유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효과적인 TRQ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치즈에 대한 7천톤 무관세 TRQ를 자연치즈의 사용과 연계시켜서 국산치즈의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유업체와 자연치즈 1kg을 가공치즈 원료로 사용할 경우에 2.5kg의 수입 원료 치즈에 대해 무관세 TRQ를 허용함으로써 국산치즈 생산을 장려하고 있는 점이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허가 축사양성화를 실시해서 농가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중간에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 낙농 분야에는 개량축진 및 조사료 확충사업 그리고 로봇착유기가 중요합니다. 로봇착유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8천 4백농가인데 전농가에 다 해 달라고 하니깐, 이 문구가 짝 빠졌습니다.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육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쇠고기에 있어서는 시장에서 수입쇠고기와 직접 경쟁하는 국내산 육우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산지가격과 경락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해서 일부 농가에서는 생산비를 밑도는 실정에 있는 만큼, 반드시 육우를 소득보전 직불제 대상품목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육우산업 기반을 위해서는 육우 전문브랜드의 유통망 구축을 통해 국내산 육우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를 향상시켜야 하며, 이와 관련해서 우선 농협하나로마트에 육우고기 입점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농가가

생산한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것이 주목적인 농협이 외국산 쇠고기는 수입을 하면서 농협의 주인인 조합원이 생산한 국내산 육우의 유통경로를 차단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육우의 경우 품질고급화 정착과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품질고급화 장려 사업이 올해부터 중단되었습니다. 농가의 고급육 생산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산 육우가 수입육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 품질고급화임을 감안할 때, 장려금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한 동기 부여를 통해 국내산 육우의 품질 향상으로 수입육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에 육우를 포함시켜서 송아지의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육우부문 송아지 생산안정제 도입은 금전적 혜택의 수혜자가 누구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송아지 공급을 통한 육우산업의 기반 조성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자면 한미FTA 협상이 타결되었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도 세계 각국과의 동시다발적 FTA가 추진될 것이며, DDA협상이 재개되면 고율 관세품목의 대폭적인 관세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 농축산업과 낙농육우산업에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서 정부 정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가 스스로의 자구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저희는 한미 FTA 타결 선언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복잡한 난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국회비준 반대를 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좌장(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정섭)

예, 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님 토론 잘 들었습니다. 처음에 저희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이 포함된 국책연구기관의 피해액 계측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셔서 조금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우 분야와 낙농 분야를 나누어서 아주 논리적인 지정토론을 준비해 주시고 발표해 주신데 대해 사회자로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환(대한양돈협회 회장)

안녕하십니까. 양돈협회장 김동환입니다. 저는 오늘 세미나에 임하면서 굉장히 착잡한 감정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누차 저희가 대책안을 만들어서 정부에 제시했고, 또 그 안이 구체화되어서 오늘 토의장에서 이런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장으로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협의를 하고 또 다른 쪽에서 의견을 받아 이것을 의견으로 확정하겠다는 것을 보고 정말 실망했습니다. 돼지고기는 2014년에 95% 무관세로 이미 칠레에서 2004년부터 10년 관세철폐로 해서 2014년에 무관세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미국이 칠레와 경쟁하기 위해서 무관세를 주장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10년 관세철폐로 되어 있는 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한 냉장육이고, 이미 7천 2백톤이 수입되고 있는데, 그보다 많은 8,250톤을 SG로 지정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삼겹살이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외국 수입 삼겹살이 들어와서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좌우한다고 봅니다. 또 삼겹살 자체가 수입 쇠고기에 의해서 많이 대체되고 있기 때문에, 소고기가 수입됨으로써 삼겹살에 미치는 영향이, 국내 돼지고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돼지고기는 먼저 개방을 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돼지고기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느냐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결론은 여러분의 의견에 맡기겠습니다. 브랜드화를 위해서 종돈계열화, 사료,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돼지는 종돈의 계열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종돈의 계열화 없이 브랜드화를 주장하고 있는 것

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 굉장히 누차에 걸쳐서 종돈의 계통조성을 해야 하고, 한국형 돼지를 만들어 우리나라 사람들 입맛에 맞는 돼지고기를 생산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누차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무시되고 왔다가 결국은 이제 한미FTA가 체결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국산 돼지고기와 수입돼지고기의 차별화를 가져와야 하는데, 국산 돼지고기와 수입 돼지의 차별화를 명분만 두겠다는 얘기죠. 지금 원산지 표시제, 생산이력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결국 국산 돼지고기와 수입 돼지고기의 차별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양돈 농가가 어떻게 살아남겠느냐, 수입 돼지고기로 치부해서 그것을 구별을 못하면 고품질 차별화도 안되고 국산 돼지고기를 생산하는 농가의 의욕도 상실될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모든 문제를 생산자에게 귀결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천적인 문제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서 한미FTA를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선 우리 생산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분뇨처리 문제입니다. 분뇨처리는 우리 생산자들이 고민을 해 왔고, 많은 비용을 투자하면서도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2012년부터 해양배출이 금지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불과 몇 년 남지도 않았는데, 결국은 분뇨처리를 갈 곳이 없으면 생산자가 돼지를 그만 길러야 되는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물론 생산자의 책임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국가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방법은 제시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청정화 문제입니다. 청정화는 소모성 질병문제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생산농가들의 MSY가 17두에서 12.8두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생산비가 17만원 정도에서 약 2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어제도 저희가 모 처에 가서 생산비 산정해 놓은 부분을 보니까 17만 몇천원으로 해놨어요, 양돈농가가 돼지 한 마리 판매해서 8만 5천원 소득을 얻고 있다고 신문에 나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양돈농가는 다 죽어가고 있어요, 저희가 대책안을 만들면서 따져 보니까 MSY

가 12.8두인데 17.4두로 계산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큰 잘못이라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계산을 하면 손실을 보는 농가가 많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계통조성이 되어서 국산돼지가 차별화되어야 결국은 수입돼지와 품질 차별화가 되고 국내 양돈농가가 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이 한 10여년 이상 되어서 국내 양돈농가의 시설이 굉장히 노후합니다. 외국의 선진국 미국 유럽 등 양돈선진국과 경쟁을 하려면 그만큼 시설이 보완이 되어서 그 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경쟁력이 확보가 된 후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개방을 해가지고 어떤 것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가, 우리가 돈을 신축하는 데만 1년이 걸립니다. 지금 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처음에 이 문제를 잡고 넘어가려 했습시다만, 생산액 감소에 대해서 연간 피해액이 연간 1,526억원이라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저희가 뽑아본 바로는 정말 1조원이 넘는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과소평가할 수 있느냐,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대책안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정말 아무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상태로 개방이 되어간다고 하면 양돈농가는 50% 이상 폐업할 것이며, 지금 폐업할 준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폐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부채를 많이 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이만 그치겠습니다.

좌장(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정섭)

김동환 양돈협회 회장님 토론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또 피해액 문제도 나왔는데 이따 좀 모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산업을 대표하시는 남호경 한우협회

회장님 토론까지 듣고, 학계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호경(전국한우협회 회장)

반갑습니다. 전국한우협회 남호경입니다. 일단 대책이라고 내놓은 부분에 대해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정책을 잘 추진해 갈 것이라 믿고 좀 두서없이 평소에 제가 생각하는 바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소고기 협상 재개를 해야 되겠노라 하는 이야기를 경제부총리가 농림부장관을 대동하고 발표했습니다. 위생조건에 관련된 얘기는 농림부 관계자가 나가 회견을 해도 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경제부서의 책임자가 나가가지고 스케줄을 상당히 땅겨가면서 하겠다는 이런 나라에 우리가 한우 먹이고 소먹이고 축산하면서 살아갑니다. 한미 FTA는 한 5년쯤 있으면 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FTA는 해야죠, 옛날에는 60-70%가 농업인구라 했지만 지금 6-7%밖에 없는 나라라고 보면 2-3차 산업의 개방 때문에 먹고사는 나라가 되어 당연히 FTA는 필연적이죠, 그렇지만 미국과 중국 FTA는 제일 마지막에 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에 그것도 무차별하게 내줄 거 다 내주었습니다. 숨도 한번 제대로 못 쉬고 타결했습니다. 농업 관계자들끼리 여기 앉아가지고 오늘도 정부가 어떻게 숫자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 우리끼리 죽일놈 살릴놈 해야 하는 그런 현실에 살지요, 정말로 우리 농민 우리 축산하는 사람들의 절규, 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정말로 경청해 봐야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경제부처나 외교부서 사람들도 여기 나와 있어야죠. 여기 대책을 보면 엄청나게 농림부로서 고민한 흔적 있지요, 특히 농가 단위의 직불제는 어렵게 끌어낸 것 같습니다. 특히 열악한 소규모 농가들 때문에는 무엇을 보더라도 이익을 보전을 해줘야죠, 이 부분도 경제부서에서 무슨 판죽을 걸지 않을까 마음 졸이며 인쇄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여기 축산부분 자료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김동환 회장도 그랬듯이 브랜드를 하면 우리나라 축산이 완성되느냐 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FTA가 체결된 후 대통령께서 평창에 있는 농가를 달랜다고 토론회 하는 자리에서 한우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유통구조라고 했습니다. 한우가 한우로 팔리는 유통시장이 되면 미국산소가 미국산소로 젓소고기가 젓소고기로, 호주산이 호주산으로 팔리는 유통시장이 되면 그 다음은 우리가 한다고, 망해도 우리가 망하다고 했습니다. 피해보상금 5마리에 백만원씩 해 주면 5백만원입니다. 현실성 없는 수준입니다. 삼성이 세계적인 브랜드가 된 것도 삼성 자체의 노력입니다. 축산도 브랜드해야죠, 하지만 지자체, 축협, 유통업체 중심으로 브랜드 해야지 정부가 할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우 자체가 브랜드입니다. 한우 자체가 세계 2백만두도 안되는 민족 고유의 문화자산입니다. 한우가 한우로 팔릴 수 있는 유통체계가 되면 그게 브랜드입니다. 기본이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브랜드로 몰아가는 농림부 정책의 전면개편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생검역 문제에 있어서 지난 4월에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소고기로 양국의 책임자가 싸인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한 번도 그 요건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네 제도나 도축장이나 사료급여정책 하나도 바뀌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네 힘의 논리로 강요하고 현지실사를 전혀 안합니다. 서류만으로 합니다. 일본은 생산이력제라는 제도에 연간 2-3조 엔을 투자합니다. 그러한 제도 때문에 20개월령 미만으로 고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광우병이 통제가 가능한 나라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우리는 서류조차 못내고 우리끼리만 광우병 청정국이라고 자화자찬하는 나라에서 삽니다. 한우가 한우로 팔리는 유통체계가 되려면 생산단계부터 DNA를 기본으로 한 생산이력체계를, 식별체계를 강하게 요구합니다. 예산이 없으면 없는대로 합니다. 국회 설득을 정부와 같이 하겠습니다.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제를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으로 3-4번 파기되었던 것을 어렵게 통과시켰습니다만, 이것이 식약청과 보건복지부 관할이라 솜방망이지요, 90평 이상 지금도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머리 맞대고 해야 하고 축산관련 행정, 생산자, 모두가 노

력해야 합니다. 우리끼리 아웅다웅하지 말고 서로 미루지 말고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헌신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좌장(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정섭)

남호경 회장님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발로 경험하신 얘기들뿐만 아니라, 한우 산업을 비롯한 축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들과 정부가 새겨들어야 할 문제들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점 감사드립니다. 이제 학계 쪽의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임정빈(서울대학교 교수)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임정빈입니다. 김정호 박사님과 박현출 국장님이 발표하신 농림부 대책안과 관련해서 코멘트를 몇 마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미FTA뿐만 아니라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인해서 크게 우리 농업부문은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합니다.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라는 문제가 있구요, 또 하나는 그러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농업인의 소득안정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UR 협상이나 지금과 같이 동시다발적인 FTA와 관련해서 농업이 시장개방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더욱더 빠른 구조조정으로 인해 우리 농업인들은 더욱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 같습니다. 구조조정 혹은 구조고도화의 방향과 관련해서 김정호 박사님의 발표나 농림부의 방향은 올바르다고 보지만, 제가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농업정책이나 농업과 관련된 문제는 소득문제로 귀착이 되는데, 저희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있는 건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으로 구성된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이 48%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진국에 비해서 농업소득의 비중이 높으므로 인해서 어려움이 가중되

고 있는 것입니다. 농업소득을 유지하는 방향은 규모화를 확대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 또는 직불제를 확충해서 농가소득을 보상하는 방안이 있겠구요, 농외소득은 바로 기회요인으로 보는데, 농림부 발표자료에도 나오지만 농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5일 근무제, 웰빙에 대한 삶의 패턴들이 도시민들의 농촌에 대한 수요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의 공간이 아닌 즐거움을 찾는 공간으로서의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농외소득도 증가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안정화하는 문제로 귀착된다고 보겠습니다.

농림부가 발표한 자료에 대해서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한미FTA는 미국이라는 농업 강국으로 인해서 주로 축산과 과실부분에 피해가 나는 것 같은데, 정부도 칠레와 FTA 때 포도나 키위 같은 과수산업, 이번에는 쇠고기와 감귤 등으로 단기적 품목별 피해대책을 세우는데, 저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개방 피해로 인한 품목 중심 혹은 임시방편적인 피해대책은 앞으로는 실질적인 역할을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DDA 협상이 이루어지고 순차적으로 FTA가 체결되면 농업이 생산대체효과 예를 들어 일부피해를 덜 보는 분야로 생산자원이 이동하면서 간접적으로 피해볼 수 있으며, 소비대체라고 해서 수요의 대체관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또 다른 쪽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개별품목으로 혹은 임시방편적인 것보다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봅니다.

스위스는 전 축종 혹은 전 경지면적에 직불제를 합니다. 농업개방은 똑같이 되고 있으며, 최근 EU에 치즈를 개방했습니다. 스위스에서 치즈는 우리의 쌀과 같습니다. 시장가격은 개방이 되면 떨어지겠지만, 직불제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생산자들과의 협의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스위스 전체 농업 예산의 69%가 직접 지불제에 편성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직불제가 현재 7종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직불제라는 것이 쌀 위주입니다. 또 정책간의 상충성이 존재합니다. 오늘 발표

에도 나온 경영이양직불제를 통해서 고령농가를 은퇴시켜야 하는데, 실제 인센티브가 작기 때문에 쌀 소득보전 직불제가 소득이 더 낮다고 하면 고령농가도 합리적인 경제 주체이기 때문에 나가지 않습니다. 실제로 은퇴를 촉진해서 규모화를 이룰 수 있는 인센티브와 관련된 경제적 분석과 실제 그분들이 떠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직불제의 농가소득 기여율이 5%밖에 안 되므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개선을 하면서 포괄적인 개방대책 지원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농업 지원대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최근 농업농촌 투융자정책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농업의 특수성에 따라 구조조정이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걸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 농정당국의 문제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원과 관련된 영향평가와 지역 특성을 무시한 지원체계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정부투자 재원은 실제 농림부가 중앙정부에서 계획을 하지만, 실제 돈이 나가는 실제 창구는 도청입니다. 도청부터 지방정부로 내려가게 되겠죠,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실제로 지방정부의 역할이 물론 여건이 안된다고 보겠습니다. 지방정부의 현재 농림관련 공무원들의 대우나 여건들이 어려운 것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지방농정체계가 중앙정부가 만들어 내는 계획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체계인지는 의문이 갑니다. 물론 자율권도 많이 넘겨줘야겠지만, 의무와 책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지방농정체계를 구축해야 효과적인 정부 재정이 쓰일 수 있고 실제 성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협상을 잘하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국내대책에 돈 수십조 넣는 것보다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선 저는 최근 1년 전에 계류된 통상절차법과 관련해서 우리의 대표적인 취약산업이 농업이고 또 개방으로부터 피해보는 산업이 농업임이 틀림이 없으니, 농업 부문의 목소리를 법적 구속력 있는 체제 안

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한국형 통상절차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통상절차법과 관련하여 농업 부문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HS세번으로, 협상에서 이제는 대부분이 농산물 관세를 감축하는 것인데 민감 품목을 가급적 적게 감축할 수 있는 협상 여건이 된다면 사실 국내 대책에 돈을 조금만 넣어도 됩니다. 하지만 현재 FTA든 WTO든 협상을 하기 위한 농산물 품목 분류체계가 매우 미흡합니다. 이번 한미 FTA에서도 민감 품목으로 분류된 것 중 기타가 많이 있고, 기타라는 것 중에 민감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품목 세분화가 잘 되어 있다면 협상하기가 편할 것이며, 논리를 구축하는데도 편하고, 이런 측면에서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좌장(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정섭)

네, 임정빈 교수님 토론 감사합니다. 전반적인 문제와 우리가 좀 소홀히 했던 영향분석의 체계 문제, 통상절차법 체계까지 잘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멀리 제주도에서 오신 제주도 지역의 FTA대책위원을 겸하고 계신 양민웅 선생님께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양민웅(제주 FTA 대책위원, 감귤농가)

양민웅입니다. 제주도 감귤의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한미FTA가 한다니까 제주도지사와 농협, 우리 FTA민간위원들은 FTA협상장마다 미국, 서울, 제주 쫓아다니면서 육지의 쌀과 같이 보호해 달라고 통사정하고 다녔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 감귤농업이 제주농민의 85%, 농가소득의 53%를 차지하는 제주도의 생명산업일뿐더러 경제주축입니다. GRDP 중 감귤산업이 8%이고, 숫자상으로 관광산업이 70%를 넘는다고 하더라도 제주도민들이 스스로 100%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감귤산업입니다. 이렇게 사정하고 다녔지만 뒤집어 졌습니다. 9월에 밀감이 별로 안나오는데 9월부터 2월까지 계절관세입니다. 그리고 계절관

세는 SG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게 오렌지가 미국에서 3-5월 정도까지 물밀듯 들어올 것입니다. 이 때에 우리 제주도에 하우스에서 한라봉, 천혜향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이것과 완전히 싸움을 붙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피해액도 엄청나게 차이가 있고, 간단히 얘기하면 제주대학에서 나온 피해액은 15년차에 1조 1,200억인데 정부에서 나온 것은 7,800억입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조정이 되어야 할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오렌지 주스가 무관세로 풀려버렸습니다. 제주에서 비상품 가공용이 13만톤 정도가 나옵니다. 이것은 가공공장에서 수매를 해서 가공 처리해줘야 비상품이 시장에 얹나가서 가격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주스가 무관세로 들어와 버리면 가공공장들이 이제 감귤수매를 안하려고 할 겁니다. 여기에 가장 제주도 감귤이 피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주감귤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일본에 가서 공부하고 왔습니다. 일본 농민들이 엄청난 자구노력을 해서 당도 12-13의 감귤을 개발해서 연간 30만톤 들어오던 오렌지가 10만톤 밑으로 수입되는 일본의 자구노력을 눈물겹게 봤습니다. 저희 제주도에서는 농축산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농림부에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는 경제관료들이 오렌지 카드로 FTA했으니까 어떻게는 제주도를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농림부는 책임지고 경제각료들을 끌어들여서 분명히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도 자구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우리도 그냥 드러누워서 주는 돈 받아먹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첫째 품질평가 기준에 당도기준 강화 및 표시 의무화입니다. 농림부에서 제주도 APC 7군데를 지원했습니다. 비파괴 선과기가 한 곳에서 연간 2만톤으로 7곳에서 14만 톤이 처리됩니다. 앞으로 제주 감귤이 살기 위해서는 현대화된 유통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확실하게 품질 기준이 밝혀져서 감귤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7군데만이 아닌 많은 시설 확장이 필요합니다. 또 감귤 다공질 필름이라고 멀칭배재가 품질개선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비가림재 배도 확대해야 하며, 비상품 과일의 가공용 활용을 위한 수매제도 정착

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능성 우수성 홍보는 각 품목자체만의 홍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농업에서 나오는 과채 채소 등의 국민건강을 위한 1일 소비 기준을 만들어서 구체적인 소비로 연결될 수 있는 홍보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축산 부문의 컨설팅지원이 있는데, 과수 부문에도 컨설팅 예산을 지원해서 농민들이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1대1 직접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술전달 컨설팅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림부 컨설팅사업 예산이 40억인데, 제주 감귤 사업에 10%를 지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FTA지원법령에 감귤 지원내용들이 꼭 포함이 되어서 제주 감귤이 세계적인 수준의 과일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좌장(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정섭)

양민웅 선생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주 사람이 아니면 모를 수 있는 제주 농업에서 차지하는 감귤의 중요성을 설득력 있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책에 대해서도 농림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중심으로 조목조목 잘 건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지정토론은 중앙대에서 오신 김종기 교수님 말씀을 듣고, 과수연합회 윤익로 회장님의 토론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종기 교수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김종기(중앙대학교 교수)

네, 아주 귀중한 토론자리에 초빙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중앙대학교 원예학과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농업 구조조정에 평소 그렇게 많은 연구를 하지 못했지만, 이 자리에서 토론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면면히 귀담아 들으면서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느끼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기술이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개발과 보급에

시간이 상당히 필요로 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농림부에서 하는 정책에 장기적인 포석을 가지고 정책을 해주십사 하는 관점에서 두 가지 정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경연의 김정호 박사님이나 농림부의 박현출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는 시장이 개방되면서 지난 십여 년간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산지에서 경영규모를 확대 조직화하는 정책 방향은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농림정책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중 하나가 생산현장의 조직화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비단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농업도 컨설팅을 받고 있는데 컨설팅업체들의 애로사항을 들어 보면 농가들이 단합하고 뭉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농림부에서도 그걸 잘 알고 정책사업을 해오는데, 산지에 가보면 정책사업자금을 받을 때 일시적인 경향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책사업을 하실 때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중요한 부분은 조직화가 되어서 자금이나 기술이 투자될 때 효율성을 높여야 하고, 산지의 조직화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야 하며 더 좋은 방향으로 가야할 것입니다.

두 번째 품목별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상세히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농업 분야에 기술발전을 위해서 많은 자원을 투자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유통 분야에서 공동마케팅 조직, 산지유통 전문조직, 브랜드화 사업, 이와 관련된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 대학에 있으므로 해서 지역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입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실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학에서 매년 평가를 받고 있는데 평가 기준은 강의를 얼마나 잘하고 연구를 얼마나 잘해서 외국의 잡지에 논문을 얼마나 게재하느냐로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농업 분야는 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 분야는 산업응용학문이기 때문에

산업화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대학의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특히 농과대학의 교수들이 대학의 평가시스템 때문에 현장에 나가는 것을 어려워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의 평가 시스템에 대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특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컨설팅의 일환으로 현장의 애로 사항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저는 지역에 있는 농과대학이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센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역에 농업기술센터가 있지만, 그러한 센터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참여가 보다 더 적극 활성화 되어야 이러한 사업들이 더 성공적으로 진행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역의 산업이 점점 더 클러스터화되어 가고 있고, 이럴 때 대학이 각 지역에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대학이 스스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정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대학의 교수들이 기술보급을 전담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선진국의 경우 이러한 제도가 잘 정착되어서 새로이 개발된 기술이 현장에 잘 보급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FTA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지역농과대학에 실질적인 기술보급 활동을 위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농산물 수확 후 품질관리 기술을 가지고 보급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역시 대학에 묶여있어 역부적인 점이 많습니다. 후에 대학에서 이러한 일을 전담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해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지역 농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술개발 뿐만 아니라 보급도 중요한데, 예를 들어 수입오렌지가 3-4월에 많이 들어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오렌지를 수확기에 무조건 에틸렌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색깔이 잘 나옵니다. 에틸렌 처리뿐만 아니

라 소독살균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적정량의 농약을 물에 첨가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도 적정품질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면 우리도 그런 기술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유통명령제를 보면 1번과와 10번과는 시장출하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강제착색과도 시장에 출하하지 못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즉, 에틸렌 처리를 말합니다. 수입오렌지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들어오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에틸렌 처리하면 강제착색으로 출하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제착색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이 미국에서는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기술이 개발되고 개발된 기술이 잘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제주 감귤산업에서는 재배생산시에 당도가 확보가 되면 수확 후 품질관리는 여러 방안이 있으니, 개발된 기술이 잘 보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좌장(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정섭)

원예작물 수확후 관리기술 전문가이신 김종기 교수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기술개발 보급의 중요성이라든가 컨설팅을 위한 산지농민의 조직화의 중요성, 아울러 농과대학 교수님들이 현지 기술보급에 나서지 못하는 교수 평가제도의 문제까지 다양하고도 중요한 문제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교수님들도 많이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토론은 과수농협연합회회장 윤익로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윤익로(과수농업협동조합연합회장)

저는 과수농업협동조합 연합회를 운영하는 회장 윤익로입니다. 우선 연합회를 소개하자면, 농협협동조합 안에 과수전문농협이 한 뜻으로 글로벌 시대에 선진농업으로 발돋움하려는 목표가 있어 연합회를 창설했습니다. 과수 생산과 유통을 책임지고 지원하고 실익증진과 국제경쟁력

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창설한지 이제 7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가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국익을 전제로 하는 FTA가 진행될 적에 어떤 산업은 이익을 가져오고 어떤 산업은 상대적인 피해가 있으므로, 양극화 현상을 조정하고 농업과 같이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의 일부 이익을 기금화해서 농업에 집중 투자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은 국회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국민의 대표들이 먼저 제안한 것이므로 꼭 이루어 질 것으로 봅니다. 한·칠레 FTA때도 선대책 후비준이라는 목표 아래 각계의 농업단체들이 노력해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과수부분에 1조 2천억이라는 기금을 처음 마련한 것입니다. 이제는 모두 다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한미 FTA가 보다 알찬 대책을 가지고 비준을 해가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님의 개회사에서도 나왔듯이 FTA에서 가장 큰 피해당사자는 농업이라는데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소득이 증가하면서 곡식의 소비가 줄고 육식과 채소 과일의 소비가 늘고 있습니다. 그것은 통계를 통해서도 축산과 과실의 중요성이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미 FTA는 반드시 제2의 기금을 법적으로 보장을 받은 후 비준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칠레 FTA 기금 1조 2천억 이외에 한미 FTA를 위한 또 다른 기금이 조성되어야 하며, 이후 계속되는 협상들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금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 부문에 지원되어야 할 기금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 등 다른 부서가 아닌 농림부가 독자적으로 운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역시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10위권에 도달하는 경제권이라면 어려운 분야인 농업 분야의 장관이 예산을 독자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양돈은 6개월, 한우 2년, 육계 30일, 채소는 1년 3-5모작, 그러나 과수

는 영년생으로 묘목 생산, 토양 관리부터 성과수를 재배하는 단계까지 5년 이상이 걸려야 수익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특성이 잘 감안된 과수부분 정책이 도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수농업 경쟁력 제고대책을 보면 앞으로의 농업생산은 친환경농업입니다. 이제는 각계에서 친환경농업을 위한 많은 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주어야 합니다. 소비자 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의 생산자들을 위해서도 친환경농자재를 이용한 농업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러한 환경회복과 고품질의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통해 농업 수입이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농림부 이외에 타부처의 반대로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확실한 개정을 요구합니다. 또 묘목생산 관련 제안 중에 키 낮은 사과로 사과 전체면적의 60%까지 구조개선한다고 했습니다. 키낮은 사과의 경우 1ha에 2천주가 필요한데 우리나라 묘목업체에서 1년에 1백만주 생산합니다. 전체 사과 면적의 60%를 키 낮은 사과로 바꾸는데 3천 4백만주가 필요하므로 34년이 걸리는 일입니다. 이런 식의 묘목지원이 현실화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과수농가는 60대 이상 고령자가 70%입니다. 기계화 지원과 고령자가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계개발이 필요합니다. 품목별 전문화 육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품목별 전문화를 주도하기 위해서 한 품목의 전국 단위 조직을 육성해서 정부의 지원을 통해 생산부터 유통까지를 선도할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전적 지원 이전에 과수산업진흥법을 만들어 진흥법 범위 안에서 과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장과 법적기반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면세유는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생산자 조직 스스로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책임지고 나갈 수 있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정책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좌장(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정섭)

대단히 감사합니다. 논리와 정열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수농

업연합회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과수산업 전반적인 부분과 한미FTA에 관해서도 비중 있는 토론해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 교수님들 토론 듣고, 방청석에 계신 분들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원근(협성대학교 교수)

방금 소개받은 윤원근입니다. 저는 생활환경에 관련된 분야라서 품목별로 절박하게 말씀하시는 내용과는 차이가 있어서 한편으로는 어떨까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대책이라는 것이 농촌대책과 조화를 이룰 적에 하나의 완결성을 가지지 않겠는가 하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의 지역개발 정책은 참여정부에 와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과거에 복지, 지역개발 등 분리되었던 것들이 삶의 질 향상법을 통해 종합적인 투자로 변모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참여정부 정책에 대한 반성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농촌개발정책은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도시민이나 농민들이 농촌에서 정주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는 것, 또 다른 하나는 농업소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농촌이 가진 총체적 자원을 활용해서 농업소득을 보완해줄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 모색입니다. 농촌정주 정책은 지금까지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대책을 보면 첫째 주택 관련 정책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택 관련 상하수도 하천정비 등이 계획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활권이 광역화되었으므로 확대된 생활권에 걸맞은 투자기준이 설정되어 마을, 광역권, 중심지의 역할 분담이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도시민이 뿐만 아니라 농민이 요구하는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농촌의 시설에 대한 시각도 단순히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질적인 측면이 중요시되고, 고품질의 농촌생활공간에 대한 노력과 보완이 필요합니다. 지역 자문을 위해 현장에 가보면 농촌현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과 현지에서 파는 제품과 현지의 홍보가 종합적으로 결

합되어 있는 경우가 적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지역경제 시스템, 농촌 경제 시스템의 재구성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의 수행에 있어서 가장 문제 되는 것이 역량에 관한 것입니다. 지자체의 역량이 과연 현 시점에서 갖추어져 있느냐 새로운 농정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가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방의 역량을 어떻게 강화하고 보완시켜 나갈지가 과제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농촌의 활로라는 것은 농촌의 아름다움을 부각시켜가는 것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에서는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촌 지역의 공간에 대한 수요를 높이기 위해서 농지뿐만 아니라 주변 경관까지를 포함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토지이용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방향이 농촌의 종합적인 계획이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좌장(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정섭)

윤원근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한미FTA 대책과는 일견 거리가 있어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농업 문제가 급속히 농촌문제, 사회문제로 바뀌고 있고, 일반인들의 관심도 농업보다 농촌 쪽에 더 많이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정토론 마지막으로 박종수 교수님께 부탁드립니다.

박종수(충남대학교 교수)

우선 저는 두 분 발표자들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락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정호 박사님의 내용에 전반적으로 동감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부탁드립니다 하는 것은 농업의 범위를 농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에 동감합니다. 특히 축산업은 전후방 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종에서 생산

된 농산물을 사료로 섭취함으로써 축산물이 생산되고 해당 축산물은 도축가공 과정을 거쳐서 소비되는 것이므로, 소위 축산업은 생산유발효과가 매우 큰 산업입니다. 따라서 FTA 피해 분석시에도 축산업은 연관산업에 대한 피해를 같이 계산해야 합리적이며, 농업인들을 이해시키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식품소비 추세와 농업생산구조 변화의 현상 가운데 축산의 성장이 두드러진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도 시대적 요구에 의해서 성장해가는 부분에 모든 시스템을 집중해서 지원해주어야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우리나라 농정 시스템은 과거 70-80년대 수준에서 크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나 일선 기술센터, 또한 농촌경제연구원에서도 축산을 담당하고 있는 인력이 상대적으로 경종 쪽에 비해 매우 소수입니다. 산업은 빠르게 변화해 나가는데 지원 시스템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차원에서 연구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박현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축산부문 국내보완대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제가 몇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첫째로 소득 향상을 위한 고부가가치 농업 육성을 위해 유통단계의 식품안전 관리 강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HACCP, 이력추적, 원산지 표시제 강화 등이 있는데, 이론적으로 우수하지만 실질적으로 단속하게 될 때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소요되는 어려운 일입니다. 실질적으로 축산물의 안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는 도축장의 역할입니다. 도축장에서 잘 처리되고 잘 포장되어 유통되면 상당 부분 작은 비용으로 높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축장의 규모화와 근대화와 관련된 구조조정 문제가 포함되고 투자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브랜드의 문제입니다. 중앙정부가 지나치게 브랜드 중심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브랜드는 지자체, LPC, 가공업체 중심으로 진행되어야지 중앙정부가 1차 농산물을 가지고 브랜드 중심정책을 펴나가는 것은 소비자에게 오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즉 중앙정부는 축

산물자체를 중심으로 지자체나 가공업체는 브랜드를 중심으로 정책사업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품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한육우 관련 우리나라 최대의 과제는 품질향상과 송아지 가격 인하를 위한 송아지 생산비 절감대책입니다. 품질이 우수해도 한우의 높은 가격으로는 소비자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현재는 한우 생산비 중 송아지 가격의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송아지 가격의 절감대책은 필수적입니다. 또한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와의 협력 시스템을 잘 개발·보급하여 생산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양돈입니다. 양돈 산업의 최대 과제는 분뇨자원화 소모성 질환 등을 포함한 질병 예방퇴치 등이며, 특히 중요한 것이 삼겹살위주의 편향된 소비구조 개선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비선호 부위에 대한 수출방안을 재고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리고 질병에 관한 상설 연구진이 형성되어 예방 및 퇴치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양계는 계열화 추진이 초점입니다. 계열화 과정 중 계열 농가와 주체간의 갈등이 큰 문제로서, 이러한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적 조치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란의 경우는 종계와 계란의 유통합리화와 이를 위한 계란 집하장의 대폭적인 시설활성화와 확대가 필요합니다. 낙농은 축산 중에서도 토지이용형 축산이므로 원천적으로 가격경쟁력에 한계가 있으며, 우유의 특성상 변질 가능성이 높아서 그 밖의 축산물과 차이가 커서 거래 교섭력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낙농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수급이나 가격에 정책적인 개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낙농의 현안은 전국 단위 집유 일원화를 위한 제도개편이며, 지방이 제거된 우유생산을 통해 우리나라 원료를 이용하게 할 수 있는 제품생산 제도입니다. 그리고 육우부분은 이승호 회장님의 토론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장(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정섭)

박종수 교수님 감사합니다. 한우, 양돈, 양계, 낙농까지 축산업 전반에 걸쳐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제 아홉 분 지정토론을 다 들었습니다. 방청석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머루 농업인(경기 파주)

현실에서 살아남으려면 '선택과 집중'의 원칙 하에서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공평성을 강조하는 것은 이론일 뿐이며,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합니다. 어떤 품목인지는 대략 정해져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95년 농림부에서 전통식품 인증을 받아 산머루를 가공하는데, 계속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중소기업청으로 가라고 합니다. 농업분야 기업의 인증을 농림부가 했다면 지속적인 지원도 농림부에서 하는 방식으로 정책 검토가 필요합니다. IMF 이후 구조조정을 강조하는데, 농업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구 인력도 얼마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농업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어떠한 경우에도 연구 인력은 계속적으로 충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농가들의 의식도 문제입니다. 이렇게 농업의 미래를 논하는 자리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고, 가공대상의 등외품이라고 하더라도 좋은 품질의 과실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남진(전남 목포)

오늘 토론회에서 상당한 수준의 보완대책을 볼 수 있으리라 상당히 기대를 하고 왔는데 다소 섭섭하고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FTA를 하면 관세가 낮아지고 외국 농산물이 더 들어와서 우리 농산물이 잘 안 팔리게 되고, 이러 와중에 우리 농업도 살리려고 하면 상황이 뒤죽박죽이 되고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수입량과 국내 생산량을 동시에 고려해서 총량을 도출하고, 이를 지역별로 분배하는 방식을 제시해서 우리 농업을 지켜가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부

문은 과감히 포기하고, 지킬 것은 확실히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농림부에서는 이러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러한 대책을 마련하고 법으로 확실히 보장해야 FTA가 비준이 되어도 실질적인 피해가 줄어들 것입니다. 현재 농림부의 대책은 진통제의 성격이어서 서서히 농업을 죽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준동(양계협회 충북도지회 회장)

양계와 계란을 합쳐서 연간 생산액이 3조원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양계 패널이 없어서 아쉬움이 큼니다. FTA를 한다는 가정 하에 양계 쪽 대책에 관해 언급하겠습니다. 계열화 사업 확대를 언급했는데 수치가 잘 맞지 않습니다. 우리 계산으로 계열화가 95% 이상 되어 있어 한계에 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열화 사업 방식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지 농가의 이익을 위해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열화 회사는 품질이 같다고 하면 저렴한 수입산을 사용할 의사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농가 쪽에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었으면 합니다. 종계는 미국과 생산성 차이가 매우 크므로, 종계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원을 해주었으면 하며, 양계농가나 협회의 의견을 반영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덕선(대한양계협회 직원)

채란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더 써주었으면 하고, 계란 집하장의 물량 확대와 세척 설비 확대, 냉장 유통을 위한 냉장탑차 확충, 계란 가공 공장 확대 등을 지원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공영도매시장은 농가 보호 차원 등에서 아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춘성(농업기술자협회 회장)

품목별 접근은 한계가 있으며, 수입산 보다 국내 생산농가 간의 경쟁이 더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품목별 보다는 농업 전반에 걸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농정의 초점이 농업 생산 쪽에 맞추어져 있는데, 이보다는 식품산업 쪽으로 무게를 두어야 합니다. 경쟁력 강화에서 규모화를 주로 말하는데, 지속가능한 농업도 동시에 생각해야 합니다.

조상수(한국퇴비농업협회 대표)

기존 세대들이 젊은이들의 아이디어를 당할 수 없으므로, 한국 젊은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젊은 인적자원의 농업 분야 유입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을 생산해야 합니다. 오늘 이 토론회에는 소비자단체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에 생산자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최고급 농산물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단지를 만들어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판매하면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정리 발언

김정호(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늘은 한미 FTA 보완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였습니다만, 앞으로 한·EU, 한·중, 한·일 등의 대책으로 이어져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앞에서 몇 분 토론자들께서도 말씀해주셨듯이 이제는 조금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대책을 생각해 볼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번 새로운 대책을 만들기보다 좀더 근간이 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연구자로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현출(농림부 구조조정정책국장)

우리가 농업 문제에 관한 많은 해법들을 이야기하고 듣고 정책으로 선택해 왔습니다. 오늘 많은 얘기들을 들을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품목별로 더욱 자세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큰 이야기를 하는 자리이고, 어떤 분야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하며,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황민영(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오늘 수준 높은 토론을 하신 것 같고, 농업이 이 어려움을 잘 협동해서 이겨내자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서 감사드리며, 오늘 나온 의견들이 충분히 잘 수렴되어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좌장(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정섭)

우리 연구원에서 발표된 피해액은 생산감소액을 의미합니다. 모형에 기초하여 계측된 피해액은 현실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FTA 이후의 상황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지만 모형에서는 현실적으로 고려가 가능한 현재의 상황이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서 피해액을 계측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액을 발표하는 것은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중요한 임무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FTA에 대한 입장은 다양하지만 향후 예산당국과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나왔으며, 일부 품목 단체가 빠지기는 했지만, 전국 단위의 생산자단체에서 많이 참석해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준 점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한미 FTA 농업부문 국내보완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D222

한·미 FTA 농업부문 국내보완대책 토론회 결과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07. 6.
발 행 2007. 6.
발행인 최정섭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 쇄 동양문화인쇄포럼
02-2242-7120 E-mail: dongyt@chol.com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